세미나자료집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1차)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

일시 _ 2016년 3월 24일(목) 14:00~17:00
장소 _ 충남대학교 사회과학관 하누리강당
주최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_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BK사업팀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후원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BK사업팀

인 사 말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인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검토하고자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등에 대해 현장·학계·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활동 강화와 복지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 나눔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온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들이 향후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사회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 예산기획실장)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민 윤 기(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좌장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10~14:40 (발표 20분, 토론 10분)	▶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 발표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전우영(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4:40~15:10	▶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발표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10~15:20	COFFEE BREAK
15:20~15:50	▶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발표자 : 윤민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전문위원)
15:50~16:20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발표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유성렬(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16:2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 차

발 표

■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 1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39
김 정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65
윤 민 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93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1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 IEA ICCS 2016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홍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사회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능력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3)을 2013년 본격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증진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ychen & Salganik, 2003).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헌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3;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와 우리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성은모와 동료들(2013, 2015a; 2015b)은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라 정의하였고,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을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화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를 제안하였다(성은모 외 2013; 성은모 외 2015a; 2015b).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역량지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미래사회의 특성과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이에 따른 역량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지만,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실제적으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현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택 ·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EA 2016 ICCS' 연구과제는 5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2차 년도 연구과제는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역량을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본조사와 IEA 2016 ICCS 국제비교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2015년도 2년차 연구과제에서는 2014년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측정을 통해 국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청소년 역량 실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역량 진단을 위해 모집단을 전국 단위로 산정하고,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별(9세~24세) 개념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에 있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 ·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고 층화집락추출법에 따라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측정된 자료에 대한 정규성, 신뢰도, 그리고 측정 구인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청소년 시기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후기 청소년(대학생), 학업성취수준별), 부모의 특성(부, 모의 학력 수준), 가정 특성(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영역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하여 청소년 시기(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에 따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분석과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EA ICCS 2016)의 예비조사 실시

본 연구의 다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 주관하는 2016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차 년도(2014년) 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대표 기관으로서 ICCS 2016 조사위원회와 IEA ICCS 2016의 조사문항 개발에 참여하여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IEA에서 확정한 조사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학교 표본을 선정하여 IEA 본부에 등록하는 등의 조사준비를 실시하였다. 2015년

2차 년도에는 2016 ICCS 국제 본조사를 위하여 1차 년도에서 확정한 IEA ICCS 2016 조사문항을 사용해서 예비조사(Field Trial)를 실시하였다. IEA ICCS 2016 예비조사는 표본선정 및 분권(booklet)으로 나뉘어 있는 조사문항의 이해와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조사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2016년 상반기에 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조사 실시 전에 수정· 보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조사지 편집과 조사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조사 실시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역량 정책의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량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국가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기존의 학업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중심의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교재/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정책전략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청소년역량지수의 구성과 측정[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①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②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

1)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③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둘째,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건강관리(Health)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학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 신체관리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 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② 과제관리(Task management)

삶을 위해 행하여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목표 및 계획 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③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 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 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 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

④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 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 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 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들일을 당해도 잘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 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셋째,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2]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2)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뿐만 아니라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2015)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 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 직업 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 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 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 보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②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 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 여가 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③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영국 EFU)

-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 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넷째,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 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 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② 리더십(Leadership)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내리는 역량
- 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 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③ 협동(team work)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짐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집단 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 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 갈등 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3]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 권리 ·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②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춰야 할 역량

- 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는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이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 적극적 정치참여: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 교실 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3)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와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의 기본개념적 틀은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와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간으로 정리 되었음

③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역량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 국가 및 역사의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 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 성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4)]

위의 구성체계를 기초로 기존의 다양한 역량측정 문항 중에서 최종 선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전부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 -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따른 측정문항 구성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4)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은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7-199)가 수행하였던 1차년도 과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CCS 2016' 의 보고서에 수록되었던 측정문항을 그대로 활용되어 기술되었음.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합계			234

2)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 실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IEA는 1958년에 UNESCO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8개국의 정부 및 비정부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EA의 연구조직은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학술, 교육, 사회학, 심리학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ICCS 이외에 IEA가 지금까지 수행해 왔거나 앞으로도 수행할 국제비교연구 조사로는 TIMMS(국제 수학/과학교육 추세비교조사), PIRLS(읽기/문해력 성취도 국제비교조사), TEDS-M(수학 교사교육 및 개발비교조사), 1990년대 수행했던 정보통신교육 비교조사(ITES)를 발전시킨 국제 컴퓨터 정보문해력 비교조사(ICILS 2013) 등이 있다(IEA, 2015).

이들 조사 중에서 ICCS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 영위하게 될 2020년의 미래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ICCS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적·기술적 훈련과 정서 및 태도적 준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각국의 시민교육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ICCS에서는 각 국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단순히 학교교육의 결과물로 상정하지 않는다. 유리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2004)가 제시했던 '생태학적 인간발달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우선 미시적인 개별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청소년들이 직접 접하는 교실과 학교전체의 문화와 교육내용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역시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더 크게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ICCS 조사는 단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한 교실 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이라는 3개 영역에 대해서 모두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ICCS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 맥락 조사(National Context Survey)를 실시하여 각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과 같은 환경맥락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위계별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효과를 미치는 과정을 선행요소(Antecedents)와 과정(Processes) 및 결과(Outcomes)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ICCS 는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PISA, TIMMS, PIRLS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충분히 개발된 측정 도구와 축적된 참여국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비교조사이라고 할 수 있다. ICCS는 특히 EU 및 OECD 가입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성취도에 대한 가장 엄정한 국제비교 조사로서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 실효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교육 성취도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행동영역의 발달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표 -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M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4, 중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 · 수학 · 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 (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 · 과학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 · 참여수준, 공동체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31개국	42개국	35개국	38개국
조사주기	3년	4년	5년	5년

다문화화·계층갈등·사회적 신뢰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시민의식함양은 매우 시의성 높은 교육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 조사부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념구성 및 조사문항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조사결과의 국내외 분석과 발표2016년 3차 조사에도 홍콩 대만과 함께 참여하여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 및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ICCS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인지적 영역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추론 및 판단능력 영역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의 경험, 성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할 의사 등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장근영, 박수억, 2011; ACER, 2010a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발달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3 2009년과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비교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차원</td><td colspan="4">내용영역 : 학교관련 시민 참여</td></tr>
<tr><td>시민사회와 체계</td><td>시민사회의 원리</td><td>시민 참여</td><td>시민적 정체성</td></tr>
<tr><td rowspan="3">2009</td><td rowspan="2">인지 차원</td><td>지식</td><td rowspan="2">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td><td rowspan="2">평등
자유
사회 통합</td><td rowspan="2">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td><td rowspan="2">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td></tr>
<tr><td>추론과 분석</td></tr>
<tr><td colspan="2" rowspan="2">정의/행동 차원</td><td>태도</td><td>가치/신념</td><td>행동 의도</td><td>실제 행동</td></tr>
<tr><td>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td><td>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td><td>투표참여의사
의견표현의사
정치적항의</td><td>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td></tr>
<tr><td rowspan="4">2016</td><td colspan="2">차원</td><td colspan="4">상동</td></tr>
<tr><td rowspan="2">인지 차원</td><td>지식</td><td rowspan="2">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td><td rowspan="2">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td><td rowspan="2">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td><td rowspan="2">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td></tr>
<tr><td>추론과 분석</td></tr>
<tr><td rowspan="2">정의/ 행동 차원</td><td>태도</td><td>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td><td>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td><td>시민참여에 대한 태도</td><td>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td></tr>
<tr><td>행동 의도</td><td colspan="4">정치적 주제에 대한 항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td></tr>
</table>

2) 조사대상자의 구성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에 참여한 초 · 중 · 고등학생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어야 하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표집 목표 학생수가 9,50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신뢰수준은 95% ±1.0%이고,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2,700명, 중학생 3,132명, 고등학생 3,684명(일반고 2,400명, 자율고 480명, 특성화고 648명, 특수목저고 156명) 및 대학생 1,000명을 포함 총 10,516명이 표집 되었다.

ICCS 2016 예비 조사는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중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639여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210명, 그리고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16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3. 조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결과

수집된 청소년 역량지수 자료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correlation), 신뢰도 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성(nomality)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영역별 측정지수의 타당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개요

조사결과, 세부 역량의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되었으며,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높아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역량 수준도 높았으며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역량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량도 높았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역량이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발달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연령에 따른 역량지수의 감소 현상이었다. 거의 모든 역량 영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영역을 제외하고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았다.

표 -4 연령대별 청소년역량지수 측정결과 개요

청소년 시기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중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생애학습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 지적호기심,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반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은 성별(t=3.165, p<.01), 학교급(F=57.394, p<.01), 학업성취도(F=539.96, p<.01), 부의 학력(F=93.834, p<.01), 모의 학력(F=94.127, p<.01), 가족구성(t=7.718, p<.01), 경제적수준(F=193.073, p<.01), 거주지역(F=6.395,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1.98(SD=.41),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1(SD=.3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87(SD=.34),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1(SD=.28)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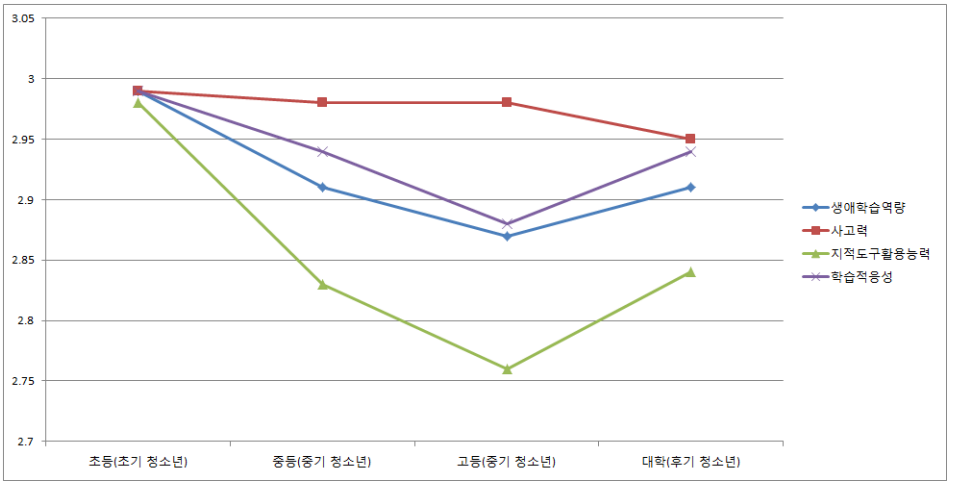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졌다. 즉,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역량지수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학습적응성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반면에 지적도구활용능력은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중기 청소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후기 청소년이 되면 다시금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였다.

②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측정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은 다른 역량영역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특히 위생관리, 폭력행동,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고 조절실패, 감정절제, 중독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활관리역량 역시 초기 청소년집단이 가장 높았고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에서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보이는 차이는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건강관리역량 및 상황대처역량지수는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과제관리역량지수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초기에는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지만 후기청소년에는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정서조절역량지수는 중기청소년 1까지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부터 역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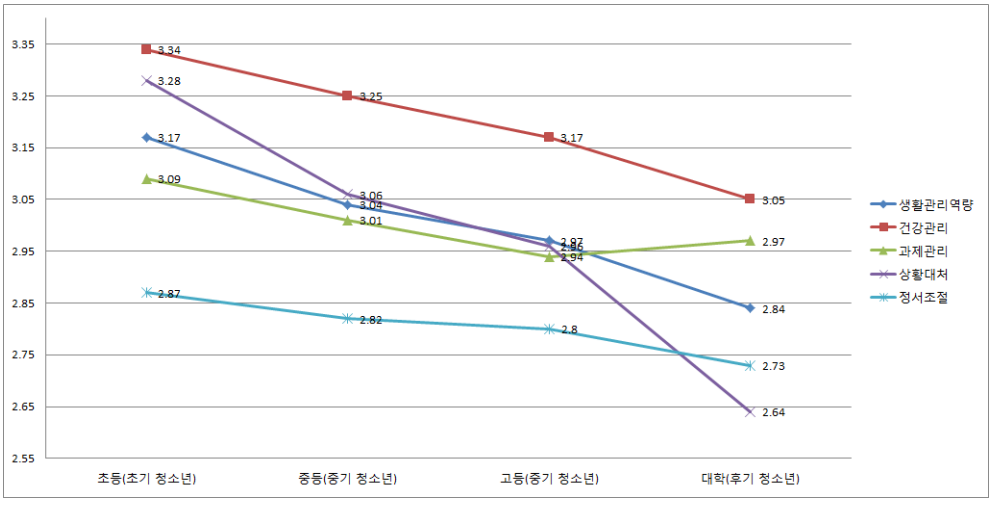

③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의 측정결과

진로개발역량지수는 상대적으로 중간으로 여가활용, 진로설계, 개척정신 순으로 높았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추기 청소년 2(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위의 다른 역량들과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졌다. 진로설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여가활용능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여가활용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가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졌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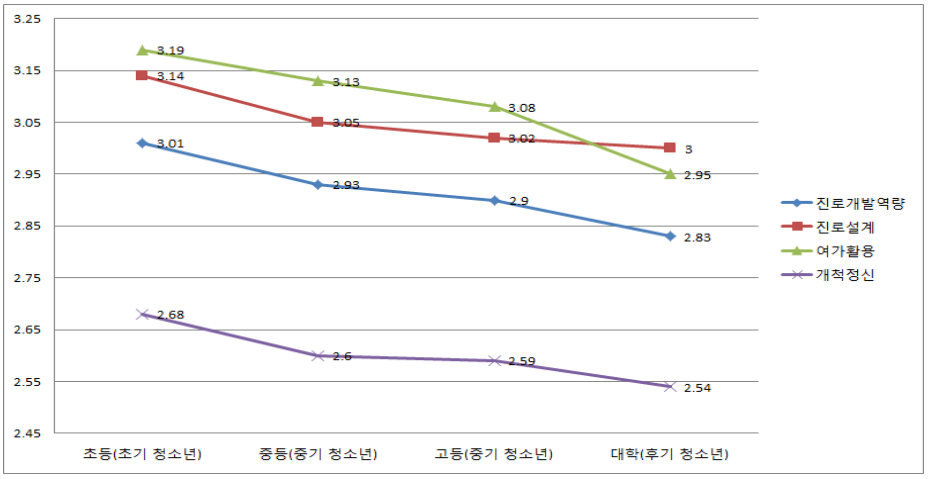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협동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도 앞서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초기 및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관계형성역량 및 리더십 모두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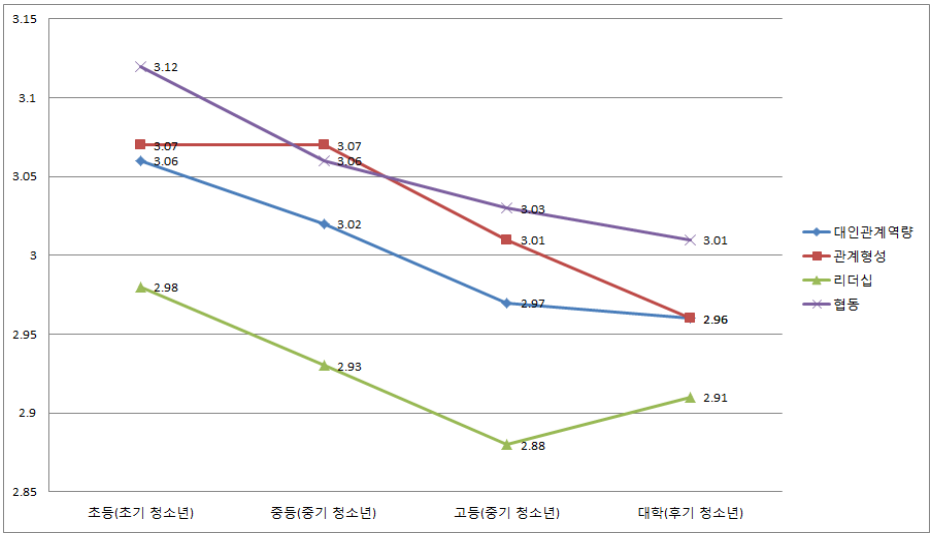

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공동체 시민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차이 비교에서는 앞서와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기(초등학생)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수준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았다가 중기1(중학생)과 중기2(고등학생)시기에는 여자청소년이 역량수준이 더 높았으며, 후기청소년에서는 이 차이가 다시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같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단 세계시민성의 경우, 초기(초등학생)청소년시기부터 중기2(고등학생) 청소년시기까지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후기(대학생)청소년시기에는 남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았다.

4. 결론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가장 현저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역량이 더 낮은 경향이었다. 이는 역량지표 자체의 발달적인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역량지표의 연령별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가설은 특정 역량영역 및 남자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집단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발달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 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의 시급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은 저연령집단일수록,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역량이 더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역량의 저하 현상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특히 역량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연속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다. 1차년도에서도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등을 확인한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점수가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 준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실태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역량 관리, 증진 혹은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이면서 양부모가 아닌 가족구성에 학업성취도 · 가정경제 · 부모학력이 수준이 낮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역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보다 유기적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이 요구된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이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배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청소년 활동 혹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차별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청소년 지도사, 관리자,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청소년의 역량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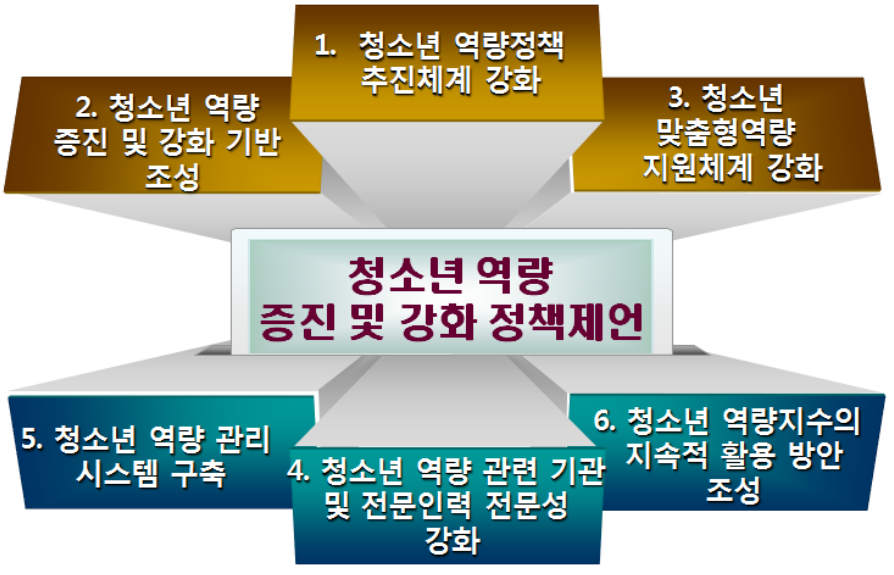

참 고 문 헌[5)]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3), 449-470.

강민수 (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배 (2013).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6, 5-31.

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교육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방법연구, 25**(3), 521-541.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0923#0000 에서 2015년 11월 12일 인출.

곽삼근, 김기연, 김민정(2008). 한국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및 교육경험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2**(2), 515-536.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b).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2-14호 [별책5])**.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교육부

교육부 (2015). 학교건강정보센터 블로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력·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 체육활성화 적극 추진.**

5) 본 참고문헌 목록은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으로서, 본 연구성과 발표 자료에는 누락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ealth2010&logNo=80195063591 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김경훈 (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반의 정보교육 정책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12-7.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2), 19-37

김기헌 (2008).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Ⅰ**(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김지연, 장근영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칭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장근영, 조광수, 박현주(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명숙 (2006).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88-116.

김문주 (2010). **팀 다양성과 팀 공유감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팀 학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조춘범 (2014). 시설아동의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5**, 39-67.

김민선(2015). 학교규칙 제 · 개정과정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 71-91.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Batzolboo, 정익중(2013).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여향: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17-246.

김선미. (2012). **대기업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학습과 변화수용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 (2009). **여가만족과 여가몰입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숙 (2009).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희, 장윤옥(2007).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과학회지, 19**(1), 133-148.

김아영(2014).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 자기주도성. **교육심리연구, 28**(4), 593-617.

김언주, 심재영(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129-154.

김언주, 심재영 (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129-154.

김은주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43**(4), 568-578.

김정대 (2001).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순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력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 강남대학교 교육학연구논문.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주희 (2012).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의 긍정심리자본과 도전정신이 창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호 (20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10**(1), 1-18.

김태준, 김안나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2009a).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 전주혜 (2009b).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이영민(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지방안 연구 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장근영, 이덕현, 한미진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윤혜경(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Ⅰ: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향숙, 조인희(2014). 협동학습을 통한 중·고등학교 토론수업의 영향 : 즐거운 수업분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38-43.

남상인, 김영빈, 황매향, 정성경(2013). 영재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중등교육연구**, **61**(4), 1087-1109.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문용린. (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세종문화사.

박선영 (2011).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 분석. **글로벌청소년학연구, 1**(2), 29-45.

박효수, 남길우, 엄나래 (2013).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방미란 (2009).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른 JigsawⅡ와 GI 협동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순근, 김동일, 김미량, 김혜숙, 유예림, 박소, 김세원, 김미림 (2009). 중·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175-198.

서동균 (2007). **대학생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여가기능, 여가몰입, 여가유능감 관계의 구조모형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9). **보건교사를 위한 보건 교육과정 운영 길라잡이**.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허선영, 정민주, 김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오헌석, 김윤영 (2013). 대학교육에서 산업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탐구. **교육방법연구, 25**(3), 543-580.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희자, 권현수 (2010).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척도의 타당성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47-171.

손태원 (1995). 학습조직과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 **경제연구**, **16**(2), 109-131.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 보고서**(연구보고 RRE-2013-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도희, 김유리(2015).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학습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1-30.

양명희, 김은진 (2010).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를 매개로 하는 관계 검증. **교육심리연구, 24**(2), 449-467.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양한주 (1997).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완용(2007).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2013.7.3. 보도자료). 2013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및 사후조치계획 발표.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620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오종석 (2014). **초등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학습관여와 지적호기심 및 과학창의성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헌석, 성은모 (2013). 융합재역량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4), 201-228.

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중민, 김수희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한국청소년상담원.

우옥영, 김대유, 김미경, 김향자, 유남숙 외 (2012).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연구**. 교육부.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유진희(2010). **중 · 고등학생의 사고양식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숙 · 김태준 · 이석재 · 송선영 (2004).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II)(RR 2004-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명희, 김진화 (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윤정헌 (1999). **호텔기업 종업원의 팀웍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현석 (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선, 강영택, 김현진, 안수경, 유재연, 이영숙, 이준석 (2010).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성과 실태조사 도구 개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2012).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93-113.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범(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채식(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채식, 최영창(2007). 청소년리더십기술 결정요인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2**, 1-14.

이해경, 연은경, 김혜원(2014). 낙관성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379-400.

이효녕, 권혁수, 박경숙, 이현동 (2013).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5), 995-1006.

임언, 황규희, 오석영, 최수정, 박현정, 이수영, 정혜령, 강은진, 김세미(2011). **2011년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사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임영구. (2013). **시스템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지연, 김정주 (2008).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김균희(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장석진, 연문희(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Ⅳ. **미술치료학회, 7**(1), 33-50.

전명순(201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명순, 권일남(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49-177.

전영숙 (2007).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종수, 권미수, 양희인(2012). **2012년 정보문화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덕훈, 서진주 (2005). 공기업의 지식경영수준 진단평가를 통한 지식경영성공도와 변화수용도의 상관관계분석. **e-비즈니스연구**, 6(3), 421-437.

정민이. (2001).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과학 글쓰기 REDFREC 모형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조지민, 동효관, 옥현진, 임해미, 정혜경, 손수경, 외.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비교 연구: PISA 2012 본검사시행보고서**(연구보고RRE 2012-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한익 (2013). 정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22**(1), 313-324.

진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이수영, 채창균, 유한구, 박천수, 이성, 최동선, 옥준필 (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최동선, 김나라, 김성남 (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Ⅱ**(연구보고 09-R19-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동선, 최수정, 이건남 (2010).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지적도구 활용 영역**(연구보고 10-R17-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유선, 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최윤진(2012). 청소년 시민참여와 비형식교육. **시민청소년학연구, 2**(1), 31-59.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수미(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 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창욱, 김정주, 송병국(2005).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2), 57-76.

최창욱, 신윤호(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통계청(2014). 사회조사.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하창순, 김지현, 최희철, 유현실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학교수업 참여도, 개인 학습시간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7**(1), 181-200.

한국교육개발원(2006).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Ⅱ):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12.3 보도자료).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한국일보(2013.6.26.). **청소년 고민 1위, 대인관계서 스트레스로.** http://www.hankookilbo.com/v/974c70973711415b92f22a3c7848aec3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 국가정보화백서.**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1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황혜리, 김지윤 (2013). 놀이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서지능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379-419.

Anderson, J. C., & Kim, E. Y. (2009).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urban students enrolled in a comprehensive agriculture program.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0*(1), 8-20.

Assaraf, O. B. Z., & Orion, N. (2005). Development of system thinking skills in the context of earth system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2*(5), 518-560.

Avolio, B. J., & Bass, B. M. (1995).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bass%20avolio%20multifactor%20leadership%20questionnaire에서 2014년 4월 28일 인출.

Avolio, B. J., & Bass, B. M. (1995).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bass%20avolio%20multifactor%20leadership%20questionnaire에서 2014년 4월 28일 인출.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eard, J. & Ragheb, M.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0.

Beyer, B. K.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April*, 270-276.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Covin, J. G., & Slevin, D. P.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1986), 626-639.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Facionc, PA., & Facione, N.. (1992).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ventory* (CC7D1). Millbrae, C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Facione, P. A. (1990). *The Delphi report.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Millbrae, Calif: Californica Academia Press. ERIC Doc. No. 315 423.

Gibbons, M.(2002).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San Francisco, CA: Jossey-Bass.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New York: Bantam Books

Greenhill, V.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

Hirayama, R., & Kusumi, T. (2004).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interpret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evaluating evidences and drawing conclusion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2*(2), 186-198.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Lombardo, M. M., & Eichinger, R. W. (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rn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 321-329.

Maw, W. H. & Maw, E. W. (1964). *An Exploratory Invertigation into the Measurement of Curiosition Elementary Children*.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801. University of Dalaware.

Merrifield, J.(2000). *Equipped for the Futur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Mitchinson, A., & Morris, R (2012). Learning about learning agilit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12*(1), 1-18.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OECD(2011). *Teenage suicide* (15-19 years old). http://www.oecd.org/els/family/48968307.pdf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OECD DeSeCo Project. (2006).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Electronic version].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_Definitions.pdf.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Lexington Books.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Schulz, W., & Sibberns, H.(2004). *IEA civic education study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Schulz, W., Ainley, J., & Frailon, J. (2011). *ICCS 2009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Seevers,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Extension, 33(4).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php에서 2014년 6월 13일 인출.

Swisher, V. V., Hallenbeck, G. S., Orr, J. E., Eochinger, R. W, Lombardo, M. M. & Capretta, C. C.(2013). *FYI for learning agility* (2nd ed.). Lominger International: A Korn/Ferry Company.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1067968D1E9C432A8EEB0A5810509D81|0|K(검색일: 2014. 6. 1)

Voogt, J., & Roblin, N. P. (2010). 21st century skills. Discussienota. Zoetermeer: The Netherlands: Kennisnet.

Wanberg, C.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openness to changes in a reorganizing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1), 132.

Witt, P. A., & Ellis, G, D.(1982). *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remendiation guide.*_North texas State University, Leisure Diagnostic Battery Project

Yeh, Y. (2004). The Interactive Influences of Three Ecological Systems on R & D Employees' Technological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6*(1), 11-25.

발표 2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김 정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세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25년의 시간 동안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7년 최초의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렀다. 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윤철경 외, 2008).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지난 25년 동안 전담부서의 변경과 변화된 정책 환경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청소년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주목하였다. 국제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좁은 의미의 동북아 국가들로 분류되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러시아를 포함하였다. 일본에 비해 중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역시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 이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고유과제인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김정숙·김기헌·황세영)의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일본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청년육성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중국은 청소년정책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김정숙·김기헌, 2015).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러시아는 2013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АНХиГС)'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의 차세대정책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발표하는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РАНХиГС, 2013).

이처럼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자료,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공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정책분야에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동북아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 교류는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중 국가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분석하였다.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 규정과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동시에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 현황

동북아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는 각 국가의 청소년정책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고 있다(Youthpolicy.org, 2014). Youthpolicy.org는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정책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는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은 세계의 주요 대륙별로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 추진 형황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대륙 중에서 2014년 현재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비율이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15개 국가 중 14개 국가(93%)가 국가 단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54개 국가 중 23개 국가(43%)가 국가 단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추진 비율은 57%(28개/49개)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 **단위: 개(%)**

국가/사회	국가단위 청소년 정책운영		국가 청소년정책 개발/수정 중		국가 청소년정책 없음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아메리카	17(47)	22(61)	14(39)	6(17)	5(14)	5(14)
유럽	27(61)	35(80)	8(18)	5(11)	9(20)	3(7)
아시아	23(47)	28(57)	14(29)	11(22)	12(24)	9(18)
오세아니아	11(73)	14(93)	4(27)	1(7)	0(0)	0(0)
아프리카	21(39)	23(43)	16(30)	14(26)	17(31)	14(26)
전체	99(50)	122(62)	56(28)	37(19)	43(22)	31(16)

* 출처:Youthpolicy.org(2014). p. 16

이 표를 통해 최근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1월 대비 2014년 4월 현재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99개에서 122개로 무려 22개 국가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유럽지역은 27개에서 35개로 8개 국가나 증가하였다.

Youthpolicy.org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나 부서, 청이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였거나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하위

부서나 청, 위원회 단위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 2〉는 청소년담당 국가부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96%)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청/위원회 현황

대륙	소속국가	담당부처/청/위원회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52	1	1
		96.3%	1.9%	1.9%
아메리카	36	33	1	2
		91.7%	2.8%	5.6%
아시아	49	47	0	2
		95.9%	0.0%	4.1%
유럽	44	43	0	1
		97.7%	0.0%	2.3%
오세아니아	15	15	0	0
		100.0%	0.0%	0.0%
전 세계	198	190	2	6
		96.0%	1.0%	3.0%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5

〈표 3〉은 주요 국가별로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들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상 중심 정책을 모아서 중앙부처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다른 점은 노인정책을 포함하는 점과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중앙부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한국과 같이 체육과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 핀란드,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방식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일본도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 유사한 내각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앙부처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하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이다.

표 3 **주요 국가별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포함 여부**

국가	부처명	국가	부처명
한국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프랑스	체육, 청소년, 교육 및 공동체 생활부 (Ministry for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All-China Youth Federation)	스웨덴	국가청소년조직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zations)
러시아	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핀란드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미국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탈리아	청소년정책과 체육부 (Ministry of Youth Policies & Sports)
영국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스페인	보건, 사회서비스 및 평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 & Equity)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Youthpolicy.org는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처럼 청소년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이나 조직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외에도 정부위원회, 협의체, 정당 등도 포함한다. Youthpolicy.org에서 이에 대한 존재 여부는 정부나 언론매체, 지역이나 국제기관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대륙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국가 단위의 기관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국가 단위 청소년관련 기관/조직 현황**

		기관/조직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34	8	12
		63.0%	14.8%	22.2%
아메리카	36	17	9	10
		47.2%	25.0%	27.8%
아시아	49	24	17	8
		49.0%	34.7%	16.3%
유럽	44	42	1	1
		95.5%	2.3%	2.3%
오세아니아	15	14	0	1
		93.3%	0.0%	6.7%
전세계	198	131	35	32
		66.2%	17.7%	16.2%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1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youth 개념과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을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지칭하는 경우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상 연령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림 1]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연령대별로 제시하였다. 46.9%는 우리나라처럼 10대와 20대를 포괄하여 청소년 정책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청소년 통계를 낼 때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79개 국가/사회가 청소년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사회가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스(youth)라는 용어를 청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운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 30대까지를 청소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10대만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얀마 3개 국가들이며,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40대를 포함하는 국가들은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3개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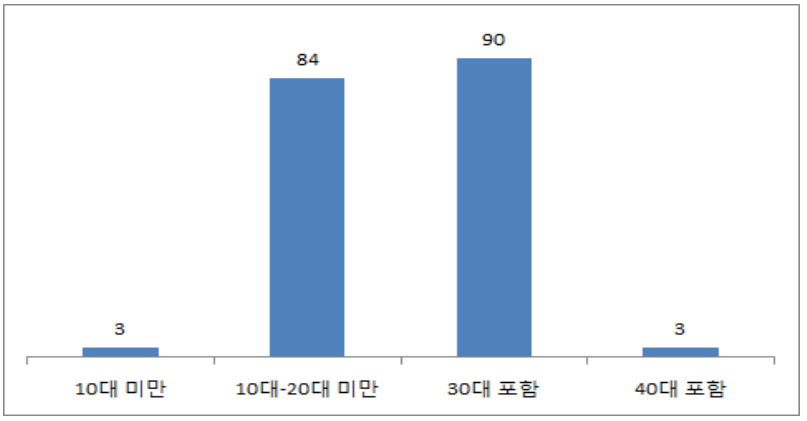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가별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은 〈부록 1〉 참조.

【그림 1】 청소년정책 대상 youth 연령 규정 현황(2014년)

표 5 **주요 국가 청소년 정책 대상 연령**

국가	대상연령	국가	대상연령
한국	9세 – 24세 (청소년기본법, 법률 규정)	프랑스	3세 – 30세
일본	0세 - 30세	독일	12세 – 27세 미만 (child& youth act, 법률 규정)
중국	14세 – 28세	스웨덴	13세 – 25세 (youth law, 법률 규정)
러시아	15세 – 29세	핀란드	0세 – 29세 (youthAct, 법률 규정)
미국	0세 – 24세	이탈리아	15세 – 35세
영국	16세 – 19세	스페인	15세 – 29세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 중 주요 국가를 정리한 것임.

〈표 5〉에서는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 대상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핀란드, 미국 등은 출생기부터 대상 연령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법적 정의는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20대 중반 이상에서 30대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동북아 국가 청소년정책 비교

1) 일본의 청소년정책

동북아지역 중에서 일본은 법령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영역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6〉 참조). 일본 「민법」은 미성년자를 20세 미만,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청소년(青少年)'을 아동(子ども), 청년(若子)으로 변경하고 정책 대상을 30대까지 포괄하였다(이광호, 2012). 청소년 정책 대상이 늘어난 것은 일본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니트(NEET)의 연령이 점차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내각부(内閣府)에서 관장하며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제시해 왔다. 2010년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平成２１年法律第７１号)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가 구성되었다. 7월 23일 추진본부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과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일본의 청소년계획은 10대 중심의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20대를 포괄하여 아동과 청년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점차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일본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만 14세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齢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유아(乳児)	만1세 미만
유아(幼児)	만1세 이상 소학교 취학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자	19세 미만

법령	대상	연령
소년(少年)	소학교취학 시기에서 만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9-24세 이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 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 (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 (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 (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 (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청년 (若者)	규정 없음 (정책 대상 0-39세)

* 출처: 김기헌(2012)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그림 2]에서 제시한 청소년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취약한 아동과 청년을 비롯해 이들 가정을 지원한다. 셋째,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환경을 정비한다. 과거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달리, 지원 대상을 10대 청소년에서 0세부터 30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국제기구들에서 강조해온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영유아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모했다. 「아동·청년비전」은 특히 포스트 청년기(post youth)로 불리는 30대 이상 40대 이하 중년층 중에서 취업, 결혼,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이나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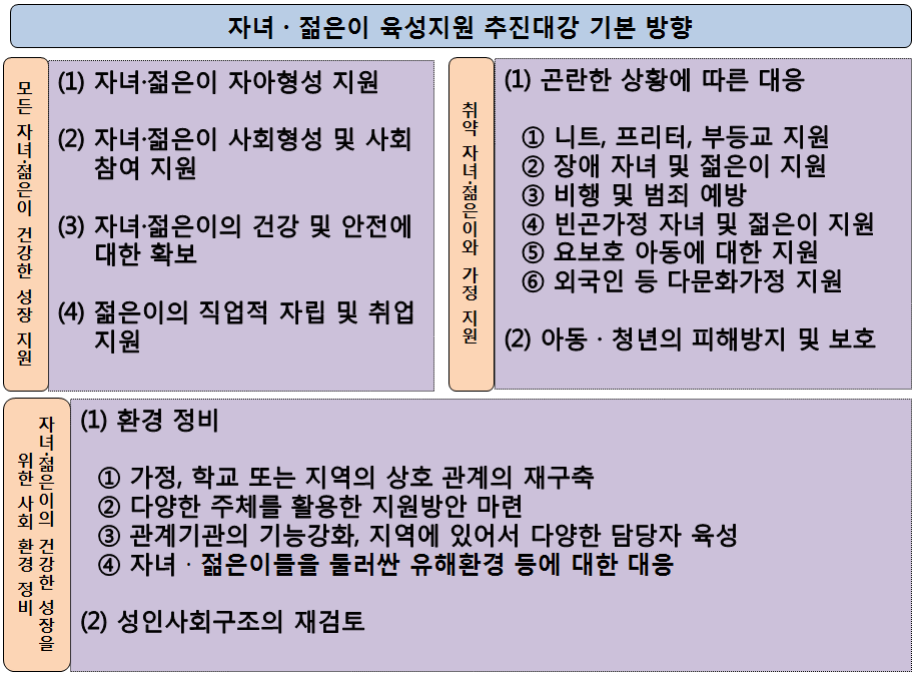

출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_gaiyo.pdf에서 2015. 7. 8 인출.

【그림 2】 일본 청소년 기본계획 「아동·청년비전」의 정책과제

「아동·청년비전」은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동과 청년들이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년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自己形成支援)과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 사업들로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아동과 청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빈곤, 장애,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과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 등 위기계층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과 이들의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4).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응하며 바람직한 성인 사회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년비전」은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정책 대상에 있어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1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20대를 포괄하여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청소년정책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YouthPolicy.org, 2014). 그러나 중국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여 개 이상의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Ngai, Ngai & Wei, 2011). 중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청년단인 공청단(共青团) 가입 연령을 14세에서 28세로 규정하고 있다. YouthPolicy.org는 중국의 청소년 연령 규정을 공청단의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청소년에 대한 중국의 연령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적 성인 연령은 18세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이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투표권은 18세부터 주어지며,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이다.[7)]

중국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中國教育部, 2010),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 제한이 있다. 다만 영어로 발표된 「중국 청소년정책의 재고찰(Revisiting China's Youth Policy)」이라는 논문을 토대로 중국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Ngai, Ngai & Wei, 2011). 이 논문에서는 중국 청소년정책의 6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념적인 맥락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공청단(共青团)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별도의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국에서 청소년정책은 공청단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청단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7)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 에서 발췌.

비롯하여 직업윤리 향상, 학습 독려, 사회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문화나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청단은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조직들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청단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에는 40만 개 이상의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이 있으며 이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생적인 단체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청소년단체나 기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 권리와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중국의 청소년 관련 법령들은 교화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정숙·김기헌, 2015).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을 재정비해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시장지향 경제개혁에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교육, 육체적·정신적 건강, 공동체 참여와 같이 청소년들의 발달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처럼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청단은 1922년에 중국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4세에서 28세까지의 연령이 가입 대상이며 공청단의 가입은 모든 청소년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단원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예비 공산당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청단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엘리트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게 되며 전국 각지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공청단원이거나 고위 정부 관료들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태자당(太子黨) 출신이거나 중국 상해를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하이방(上海幇) 출신이다. 공청단 출신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한 후진타오(胡錦濤)가 있다(이경자, 2015).

청소년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 및 역량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된 「중국아동발전요강(中国儿童发展纲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余雅风, 2008). 이 요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비롯해 교육 등 지덕체(德智体)의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9년간 의무교육 실시, 고등교육 대중화를 비롯하여 취약 청소년 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未成年人犯罪法)」,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등 법령을 꾸준히 제정하고 개정해 왔다. 청소년들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12355 청소년 서비스 센터(12355 青少年服务台)와 청소년 권익수호단체(青少年维权岗) 등을 구성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余雅风(2008)은 중국 청소년 발전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이자 도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청소년의 불공정한 대우와 남녀 차별 문제가 중국의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전국 형사범죄 중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까지 30%를 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70%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범죄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청소년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트 중심인 공청단이 청소년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러시아연방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청소년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결혼 연령과 관련하여 부모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 부모동의가 필요한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이다. 투표권은 18세에 부여되며, 피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21세이다. 법적 성년 나이는 18세이며, 범죄 처벌 연령은 14세이다.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АНХиГС)'에서 제시한「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РАНХиГС, 2013). 이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정책의 핵심적인 영역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비공식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여 차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세대가 정규교육을 통해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비형식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강화시킨다.
② 차세대가 중심이 되어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과 함께 자기실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③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진로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차세대법률 클리닉 등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④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⑥ 마약이나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⑦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⑧ 점차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⑨ 차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⑩ 다문화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⑪ 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국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국가기금과 관련하여 차세대정책 기금을 7억 루블 규모로 유지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4억 5천에서 5억 루블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차세대조정센터를 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⑫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우고 차세대들의 미디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4) 한국과 동북아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청소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의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은 국내 법령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에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규정이 다르나 대체로 「청소년기본법」의 연령규정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연령 규정이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2조의 1에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으로 19세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령 정의로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 「주민등록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15조, 「국민투표법」 제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비롯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등이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 20대 초반을 포괄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나 아동에 관한 규정이 18세나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정책적 지원이나 수혜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후자는 대체로 성인들에 대한 아동 혹은 청소년 보호라는 맥락에서 「민법」상의 성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국내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비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3조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제4조 ①의 청소년증 연령은 9-18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법령	대상	연령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제3조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제2조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제2조1,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제2조1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제2조6,「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0,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8,「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4,「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제2조13
	유아	6세 미만	제11조
	운전면허	18세 미만	제82조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근로기준법	최저연령	15세미만	제64조 ①
	연소근로자	18세미만	제65조 ①, 별도로 연령을 정의하는 조항은 없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규정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제9조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제2조
	촉법소년	10-14세 미만	제4조 ①,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함.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제4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제24조
공직선거법	선거권	19세 이상	제15조 ①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제7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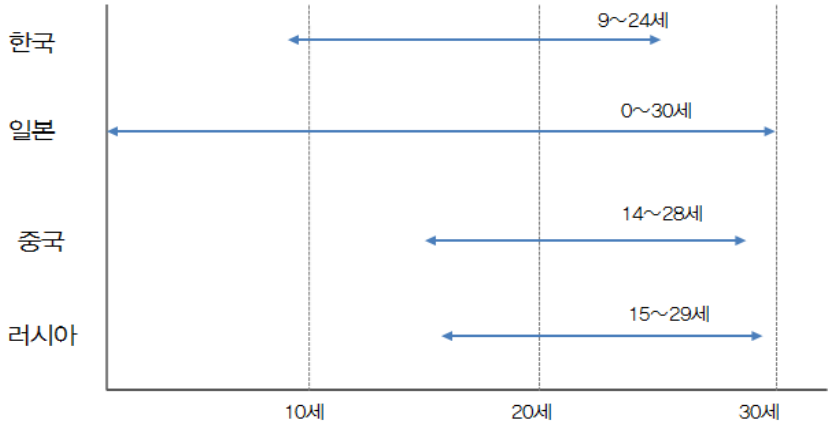

【그림 3】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 대상 연령 규정 비교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는 20대 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책대상으로써 청소년(youth)의 연령 정의를 3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절반(50.3%)이 넘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연령 규정을 최소한 20대 후반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2)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청소년기본법」제13조①에 근거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법적근거에 의해 처음 수립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이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현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추진 중에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며 목표는 4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33).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행복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육성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김기헌, 2014). 정책 목표는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책 과제는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제시하고 있고 중점과제별로 75개의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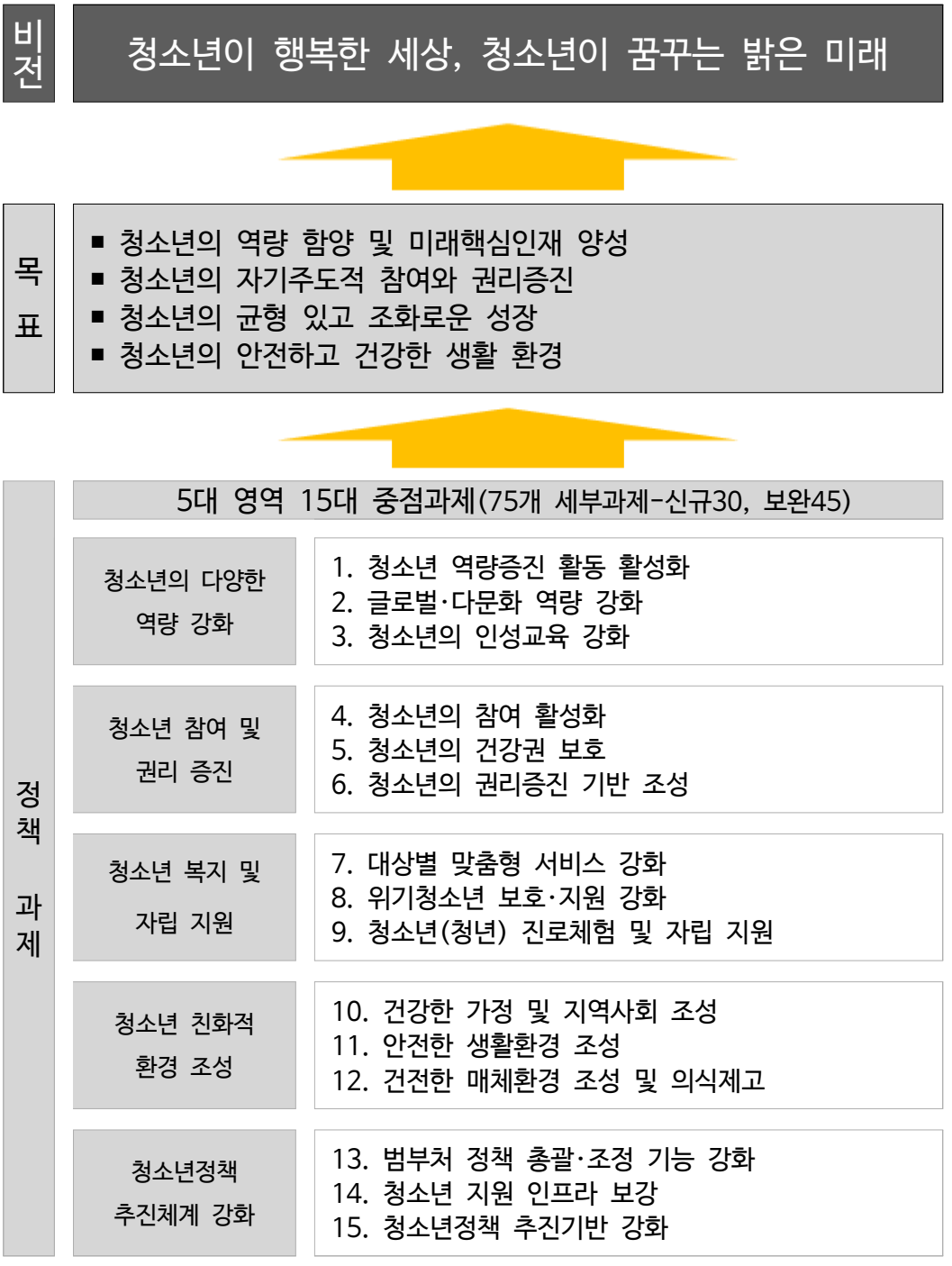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 33.

【그림 4】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계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청년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과 연동되는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3개 국가들이 정책 대상에 20대 후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10대 시기의 진로체험문제와 20대 시기의 자립문제가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30대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90개 이상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20대나 30대를 위한 청년 정책이 없다. 청년 정책이 별도의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법령과 정책기본계획 등의 정책 영역을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지도 않다. 청년 관련 법령은 한시법으로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이며, 주관부처도 분명하지 않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의 청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청년 전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 규정과 맞물려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상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에서는 향후 동북아지역 청소년정책 연구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1) 법령 정비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단기적으로 정책 대상 연령에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1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과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장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 8 청소년기본법 연령 규정 개정(안)

안	기존 법안(제3조(정의) 1)	개정(안)
1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이란 9세 이상 **2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청년**"이란 **3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20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청년을 추가하는 방안(2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 법령에 아동(Kind), 청소년(Jugendliche), 청년(Heranwachsende),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등의 용어를 용례에 따라 명확하게 사용하고 중복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표 9〉 참조).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이 2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에 각 법령별로 특별한 사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연령규정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령 통일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주기적인 접근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아우르는 법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3안).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 대상 연령을 34세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까지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독일의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 규정 현황

법률	대상	연령규정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노동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 출처: 김기헌(2012); ** 노동법의 경우 국제적 연령기준인 15세를 따른 것임

2)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방안 강화

전 세계 및 동북아지역의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5대 영역 중 복지와 함께 묶여 있는 정책 영역을 이 과제로 분리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반 구축을 제외하고 아동의 '보호'와 청소년의 '역량증진', 그리고 청년의 '자립지원'이라는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책 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제5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부분을 중점과제에서 정책 영역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 상 청년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면 정책기본계획에서 2016년부터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김정숙·김기헌(201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NYP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통권 제4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 방향(안).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비공개).

김기헌(201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 평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윤철경·김영지·김기헌·오성배(2008).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광호(2012). 전후 일본 청소년정책의 단계적 변화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5), 319-343.

이경자(2015). 중국의 청소년 정책과 공청단의 역할. **청소년현안 Blue Note** Vol. 3 가을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0.

【외국문헌】

(영 어)

Ngan-Pun Ngai, Sek-Yum Ngai and Fang Wei(2011). Revisiting China's Youth Policy. *Forum 21: European Journal on Child and Youth Policy*, 17, 54-65.

Youthpolicy.org(2014). The State of Youth Policy in 2014. A Publication of Youth Policy Press. http://www.youthpolicy.org/library/wp-content/uploads/library/2014_State_Youth_ Policy_2014_En.pdf

(일 본 어)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0). 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_gaiyo.pdf에서 2015. 7. 8 인출.

(중 국 어)

余雅风(2008). 改革开放三十年与青少年发展政策. 人民网-理论频道.

(러 시 아 어)

РАНХиГС(2013).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http://www.youthpolicy.org/library/wp-content/ uploads/library/report-fadm-ru-2013-11-13.pdf

【인터넷 검색자료】

Youthpolicy.org. 국가별 fact-sheets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japa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russia/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5년 6월 10일 모두 인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0923#0000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30&efYd=20150804#0000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3371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8&efYd=20150622#0000

청소년복지지원법(법률 제12700호, 2014.5.2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83&efYd=20150529#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20&efYd=20140929#0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300&efYd=20150529#0000

아동복지법(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2&efYd=20150928#00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68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5&efYd=20151223#0000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42&efYd=20151119#00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88&efYd=20141119#0000
공연법(법률 제13298호, 2015.5.18.,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10&efYd=20141119#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 2015.5.18.,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05&efYd=20151119#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 2015.5.1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06&efYd=20151119#0000
도로교통법(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3&efYd=20150811#0000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형법(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efYd=20141230#0000
소년법(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민법(법률 제12777호, 2014.10.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862&efYd=20151016#0000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공직선거법(법률 제13617호, 2015.12.24.,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801&efYd=20151224#0000
국민투표법(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1737&efYd=20090212#0000

발표 3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윤 민 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 및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일반고 중심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들의 사회이행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강영배, 김기헌, 2004). 고교 졸업 후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외에도 창업, 군입대, 취업 등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모색하며 대학 비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로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약 3.5명 중 1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넘게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임금격차는 물론 내부노동시장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만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들로부터 '간파'되면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조한혜정, 2014).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조차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비진학 청소년 규모의 증가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조한혜정, 2014).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증가 속에 최근 높아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성 확대에 집중 된 경향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특성화고를 설립하여 대학 진학을 억제하는 한편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조한혜정, 2014).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 분야 5대 개혁과제로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직업교육의 정상화' 슬로건 아래 도입된 '마이스터고 육성전략(2008.7)',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5)',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방안'(서울특별시청, 2013) 역시 특성화고 청소년들 중심의 원활한 진로 및 직업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분의 고졸 채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 속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대학 비진학 관련 연구 역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고졸취업자들의 취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고졸취업자들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 · 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된 비진학 관련 연구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 인력의 유휴화 및 장기 실업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취업 성공 요인에 주목한다. 고졸 학력 청소년들의 취업 실태와 취업 성공률 상승에 공을 들여온 국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이들 연구들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고용정책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공론의 지평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고의 설립 취지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여전히 다수의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교육 풍토 속에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 시켜 온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풍토 안에서 일반고 출신의 비진학 청소년의 존재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달리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경쟁에서 뒤쳐진 후 뚜렷한 향후 진로계획 없이 무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이필남, 2014). 또,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직업과는 관련되지 않은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비숙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며 열악한 근로 여건과 직장 내 부당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이상준, 이수경,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고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위축감에서 비롯된 자존감 결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취업 탐색을 저해하며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를 지속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일반고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동기부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조한혜정, 2014).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형태의 직업반을 운영하거나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허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또 진로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 시키거나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위탁직업교육 역시 행정적인 정보 제공과 같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최동선, 박동열,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고 졸업 후 1-2년이 안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다.[8]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진학 결정 사유와

8) 따라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청소년들, 학교 박 청소년, 대학 진학 후 중도포기 한 청소년들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들 청소년들 역시 대학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생각 없는' 아이들로 치부하며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과정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사회 진출 이행 경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살펴보며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원)자료를 분석하였고, 보다 엄격한 양적방법론을 동원해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결함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 실수를 제외해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9)]

9)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학 비진학 규모 산출 방식은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차년도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재수생 규모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재수생 규모가 국가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자 규모 추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비진학 청소년 인구 추정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발행하는 대학 진학자 수가 2011년 이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으로 발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격자 기준에 기초한 대학 진학률은 과장되고 비진학자 비율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11년 교육과정 변화와 고등학교 계열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교육통계연보는 대학 진학자 수를 합격자 기준이 아닌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1년 대학 진학자 규모는 2010년에 비해 급격하게 축소되는 동시에 비진학자 비율

표 Ⅱ-1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 (2005~2015)

(단위: 명, %)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2015	615,462	435,650	179,812 (29.2)	442,590	349,250	93,940 (21.1%)	101,884	36,738	65,146 (63.9%)
2014	632,983	448,817	184,166 (29.1%)	453,046	356,752	96,294 (21.3%)	106,521	40,478	87,872 (62.1%)
2013	631,197	446,474	184,723 (29.3%)	449,975	379,290	110,133 (22.3%)	105,907	44,481	74,590 (58.3%)
2012	636,724	453,899	182,825 (28.7%)	453,242	373,431	116,771 (23.4%)	108,950	54,475	66,054 (50.0%)
2011	648,468	469,961	178,507 (27.5%)	470,605	372,561	123,083 (24.2%)	114,690	69,961	55,424 (39.0%)
2010	633,539	477,384	156,155 (24.6%)	477,470	389,241	88,229 (18.5%)	156,069	111,041	45,028 (28.9%)
2009	576,298	448,224	128,074 (22.2%)	424,888	360,895	63,993 (15.1%)	151,410	111,348	40,062 (26.5%)
2008	581,921	448,321	133,600 (23.0%)	423,513	372,102	51,411 (12.1%)	158,408	115,407	43,001 (27.1%)
2007	571,357	437,180	134,177 (23.5%)	412,649	359,478	53,171 (12.9%)	158,708	113,487	45,221 (28.5%)
2006	568,055	422,693	145,362 (25.6%)	405,455	354,647	50,808 (12.5%)	162,600	111,601	50,999 (31.4%)
2005	569,272	417,835	151,437 (26.6%)	399,013	352,344	46,669 (11.7%)	170,259	115,164	55,095 (32.4%)

* 출처: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이하 표 및 그림 동일), 2015년 10월 29일 추출.
*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1년 이전 자료는 실 등록자 기준이 아닌 합격자 기준의 수치임.
* 특성화고의 2011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수치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자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중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은 2009년 22.2%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24.6%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자 수 산출방식이 합격자 기준에서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1년 이후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비진학자 비율을 산출했을

은 급증하는 것처럼 통계수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전후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비진학자 규모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비진학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에는 2011년 전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 전체 고등학생 중 비진학자의 비율은 2011년 27.5%, 2012년 28.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29.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 현재까지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일반고와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비진학 비율 증가 추세 속에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대조적인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도 12.1%, 2009년도 15.1%, 2010년도 18.5%를 보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약 3% 포인트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10년도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 11.7%에 비해 약 5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그러나 [그림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4.2%에서, 2012년 23.4%, 2013년 22.3%, 2015년 21.1%로 줄었으며, 매년 약 6천 명에서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약 1만3천 명가량 감소해 2011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 진학자 수 산출 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도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 증가 시점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7%-29%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Ⅱ-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11년 39%, 2012년 50%, 2013년 58.3%, 2014년 62.4%, 그리고 2015년 63.9%까지 증가해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약 6%-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으로

10) 2008년을 기준으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시적인 요인으로는 2009년도 세계경제위기(서브프라임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들이닥친 경제위기 속에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고졸 청소년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 나타나는 고용불안은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졸업장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한혜정, 2014)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활성화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부 정책의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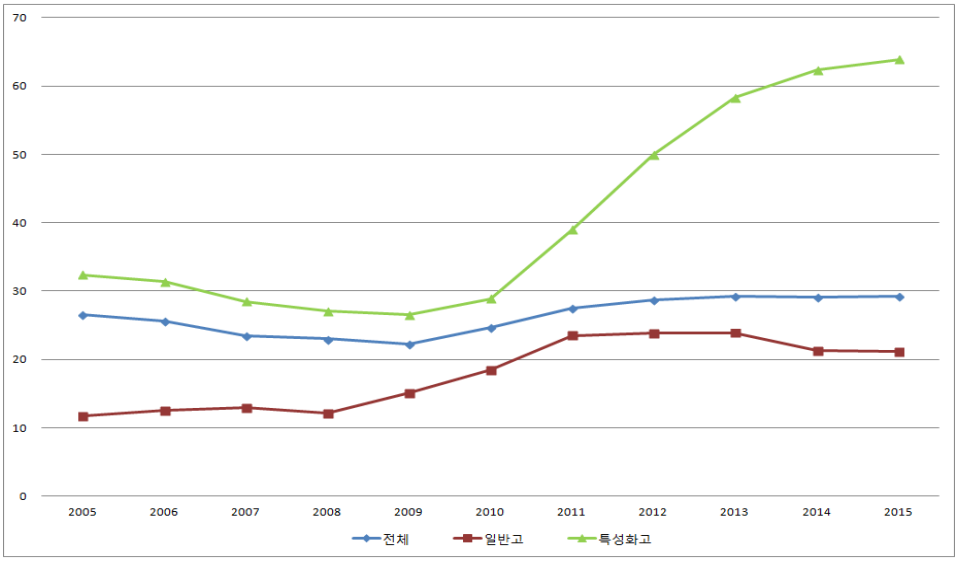

【그림 Ⅱ-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3)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변화 추이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오늘 날 고등학교 졸업 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아래 〈표 Ⅱ-2〉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Ⅳ-2〉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2011년 4.4%에서 2015년 10.1%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4.8%였던 일반고 취업률은 2014년 9.3%를 기록하며 약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지난 5년 간 이와 같이 약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11] 반면, 특성화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률이 2011년 68.2%에서 2015년 72%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성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낮은 취업률은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1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실태는 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Ⅱ-2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실태(%)

구 분	일반고			특성화고		
	취업	무직	군입대	취업	무직	군입대
2015	10.1	18.7	0.1	72.0	17.4	0.3
2014	9.3	14.3	0.1	72.3	13.6	0.4
2013	4.8	16.4	0.1	70.1	–	0.5
2012	4.3	18.0	0.1	77.8	–	0.7
2011	4.4	16.4	0.1	68.2	–	1.0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분석의 틀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와 증가 추이를 앞 장에서 살펴본 데 이어 이 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과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고3 시기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학교경험, 학업능력 등과 같은 개인 및 소속 고등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고졸 후 청소년들이 직업세계로 이행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 (ie.,취업, 진로, 진학)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에서는 어떠한 청소년 개인 및 학교 관련 변인들이 일반고 3학년 청소년들의 고졸 후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형 역시 고교 졸업 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 또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 일반고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 및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업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분석은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단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표집을 선별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교육 수준, 양부모 가정 여부 변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만들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다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경제적 취약계층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취도 하위집단 역시 학급 석차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이들 중 하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성취도 하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분변수가 종속변인일 때 사용하는 로짓(Logit) 모형 분석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짓 분석 모형은 교육고용패널 데이터의 위계적인 데이터 구조(학생, 교실, 학교)를 반영하지 못해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동시에 통계적인 유의도를 과장 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기에서는 휴벌트-화이트 표준오차 (Hubert-White Standard error) 추정방식에 기초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선행연구와 사전분석에 기초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 관련 요인들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든 독립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와 변인 설명은 [부록 표-1] 에 제시되어 있다.

2)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먼저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모형의 종속변인은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대학 진학 예정자들을 0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고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분석모형은 우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1차 모형에 이어 자아성숙도 및 미래계획 유무를 2차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의 구조적 특성 및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아래 〈표 Ⅲ-1〉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배경을 1차 모형에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이와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3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과 가족구성 특성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도 비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대학 비진학 계획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 (남성=1)	0.53(0.43)	0.42(0.44)	0.41(0.47)	0.38(0.38)
자산 규모	0.48(0.27)+	−0.37(0.30)	−0.44(0.30)	−0.61(0.33)+
부_교육수준	−0.33(0.16)*	−0.31(0.16)*	−0.24(0.16)	−0.19(0.16)
모_교육수준	−0.14(0.22)	−0.07(0.23)	−0.07(0.24)	−0.12(0.24)
양부모 가정	−1.34(0.63)*	−1.29(0.62)*	−1.21(0.65)+	−1.55(0.64)*
형제 · 자매 수	−0.30(0.19)	−0.30(0.19)	−0.28(0.21)	−0.24(0.21)
학업 성적	0.04(0.01)**	0.04(0.01)**	0.04(0.01)**	0.03(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55(0.36)	0.61(0.39)	0.41(0.45)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19(0.22)	−0.19(0.22)	−0.04(0.20)
미래진로대화		−0.08(0.14)	−0.00(0.15)	0.08(0.17)
사회적자본		−0.21(0.22)	−0.15(0.22)	−0.03(0.18)
미래직업계획 (있음=1)			−0.47(0.37)	−0.44(0.38)
자아성숙도			−0.42(0.18)*	−0.32(0.20)
고교유형 (공립=1)				0.64(0.40)
고교계열 (문과=1)				0.11(0.33)
지역 (특별시/광역시=1)				−0.10(0.71)
지역 (시군구(동)=1)				0.02(0.74)
일반고 진학 목적 (대학진학=1)				−1.07(0.37)**
학교만족도				−0.16(0.2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79(0.36)*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57(0.36)
절편	−1.11(1.26)	−1.08(1.49)	−1.07(1.57)	0.82(1.72)

+p〈.10, *p〈.05, **p〈.01

이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구성 역시 비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일 경우 비진학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방과 후 보호자 유무,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부모와 미래 진로 대화, 사회적 자본)들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개인의 자아성숙도 및 향후 직업계획 유무를 추가한 모델 3의 경우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는 진학 계획 여부에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학교의 구조적 변인들과 함께 일반고 진학 이유, 학교만족도, 친구와의 대화 우선순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와 같은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대학 진학 계획에 미치는 학교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학교의 구조적 특성(고교유형, 고교계열, 학교 소재지)에 따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반고 진학 이유가 대학 입학 목적이 아니었던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학교 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의 유무는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에 따른 진학 계획 확률비는 .45배(=exp(-0.79)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45배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대학 진학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교 내 의미 있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비진학 계획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형 분석이 일반고에 재학 중인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래 분석 결과 〈표 Ⅲ-2〉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부모 가정구성 변인들은 다른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 계획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양부모 가정일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집단일지라도 집단 내 성취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학업성적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하위 집단 내 학업성취도 역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업수준이 낮은 집단 내에서도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성취도 하위 집단 모형 (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 (SE)
성별 (남성=1)	0.70(0.50)	0.80(0.71)
자산 규모	−0.76(0.44)+	−
부_교육수준	0.09(0.24)	−
모_교육수준	−0.36(0.34)	−
양부모 가정	−2.01(0.67)**	−
형제 · 자매 수	−0.02(0.23)	1.24(0.50)*
학업 성적	0.04(0.03)	.029(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18(0.53)	1.96(1.03)+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07(0.32)	−0.09(0.29)
미래진로대화	0.09(0.20)	−0.24(0.39)
사회적 자본	−0.18(0.21)	0.17(0.62)
미래직업계획 (있음=1)	−0.45(0.51)	−0.18(0.73)
자아성숙도	−0.18(0.23)	0.01(0.38)
일반고 진학 목적 (대학진학=1)	−1.90(0.46)**	−2.25(0.95)*
학교생활 만족도	−0.24(0.25)	−0.41(0.92)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99(0.42)*	−1.66(0.7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40(0.42)	0.81(0.95)
고교유형 (공립=1)	0.87(0.50)+	0.57(1.16)
고교계열 (문과=1)	−0.43(0.40)	1.00(0.83)
지역 (특별시/광역시=1)	−0.37(0.71)	−0.40(1.02)
지역 (시군구(동)=1	−0.09(0.82)	−0.95(1.24)
절편	0.17(3.27)	−5.27(3.05)+

+p〈.10, *p〈.05, **p〈.01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일반고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형제자매 수와 방과 후 보호자 유무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수가 많고 방과 후 집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 변인들은 전체모형 분석 결과와는 달리 대학 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배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학교 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형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데 이어 아래 〈표 Ⅲ-3〉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로짓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형을 분석하였다. 대학 진학자들을 0 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았고,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능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구성 변인들을 포함한 모델1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고 청소년들의 수능성적은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비진학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반면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 형제자매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은 수능성적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보다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 (남성=1)	0.33(0.48)	0.16(0.50)	0.16(0.51)	0.22(0.48)
자산 규모	−0.38(0.51)	−0.28(0.51)	−0.27(0.51)	−0.29(0.55)
부 교육수준	−0.23(0.29)	−0.21(0.31)	−0.24(0.30)	−0.23(0.30)
모 교육수준	0.47(0.42)	0.57(0.45)	0.57(0.45)	0.44(0.43)
양부모 가정 (친부모=1)	−1.33(1.24)	−0.84(1.27)	−0.81(1.30)	−1.19(1.16)
형제 · 자매 수	−0.26(0.20)	−0.33(0.22)	−0.31(0.21)	−0.14(0.21)
수능 성적(백분위)	−1.41(0.30)**	−1.51(0.36)**	−1.50(0.36)**	−1.72(0.36)**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43(0.58)	0.43(0.58)	0.56(0.59)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26(0.29)	0.25(0.29)	0.16(0.34)
미래진로대화		−0.35(0.19)+	−0.37(0.19)*	−0.35(0.17)*
사회적 자본		0.47(0.28)+	−0.51(0.27)+	−0.54(0.32)+
미래직업계획 (있음=1)			−0.04(0.51)	0.22(0.56)
자아성숙도			0.22(0.22)	0.32(0.23)
일반고 진학이유 (대학진학=1)				0.63(0.59)
학교만족도				−0.23(0.29)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30(0.5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28(0.47)
잠재적 비진학				1.42(0.73)+
고교유형 (공립=1)				−1.19(0.57)*
고교계열 (문과=1)				0.59(0.39)
지역 (특별시/광역시=1)				2.64(1.18)*
지역 (시군구(동)=1)				2.37(1.29)+
절편	−3.69(2.01)+	−5.93(2.25)**	−5.85(2.22)**	−7.31(2.23)**

+p<.10, *p<.05, **p<.01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 및 대화 여부를 추가한 모델2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지의 여부와 사회적 자본이 대학 진학 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수학능력 점수가 동일하다면 부모의 자녀 관심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과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일수록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독립 변인들이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것에 반해 고졸 후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들의 진로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청소년들의 고3 재학 시절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를 추가한 모델 3의 분석결과에서는 자아성숙도나 고교 시절 직업계획 여부가 고졸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구조적 특성과 학교경험 변인들을 포함한 마지막 모형에서는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대학 진학 계획이 없었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 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계획을 갖는지의 여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 학교만족도,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유무,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등의 변인은 비진학 이행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Ⅲ-4〉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결과는 수능성적 하위 집단 (하위 33%) 청소년들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학 결정요인을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부모와 향후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면 비진학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낮더라도 부모와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화가 부족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Ⅲ-4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수능 하위 집단 모형(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SE)
성별(남성=1)	0.46(0.62)	−0.12(0.64)
자산 규모	0.01(0.76)	−
부 교육수준	−0.26(0.36)	−
모 교육수준	0.62(0.57)	−
양부모 가정(친부모=1)	−1.85(1.30)	−
형제 · 자매 수	−0.14(0.25)	−0.60(0.35)+
수능 성적(백분위)	−2.15(0.80)**	−1.95(0.57)**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60(0.65)	0.47(0.92)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35(0.46)	0.61(0.64)
미래진로대화	−0.36(0.20)+	−0.55(0.28)+
사회적 자본	−0.54(0.43)	−0.43(0.51)
미래 직업계획(있음=1)	−0.15(0.67)	0.38(0.66)
자아성숙도	0.11(0.25)	0.32(0.42)
일반고 진학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1)	1.02(0.53)+	0.31(0.99)
학교만족도	−0.33(0.46)	0.05(0.4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90(0.70)	−0.37(0.87)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03(0.53)	0.02(0.71)
잠재적 비진학	1.78(0.82)*	1.51(1.15)
고교유형(공립=1)	−1.97(0.94)*	−0.78(0.76)
고교계열(문과=1)	0.42(0.48)	1.73(0.79)*
지역(특별시/광역시=1)	2.45(1.12)*	2.64(1.00)**
지역(시군구(동)=1)	1.36(1.36)	2.29(1.41)
절편	−8.20(2.96)**	−9.68(2.52)**

+p<.10, *p<.05, **p<.01

일반고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른 개인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외에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3 시기 대학 진학계획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종 대학 비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진학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4〉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일지라도 수능성적이 좋은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 · 자매 수가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일지라도 자신의 진로 계획을 부모와 상의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의 구조적 특성 역시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 중 문과 계열 출신 청소년들은 이과 출신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경험은 사회구조적 특성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 심층면담 분석 결과

지금까지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면 여기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유를 가지고 대학 비진학이라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 생활실태와 더불어 그 결정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일반고 안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선택은 실패로 간주되고,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은 그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회와 학교에서 부유하는 위치에 놓였다. 이들은 대학 이외의 다른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로 인해 졸업 이후로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학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처음부터 대학 비진학을 염두에 두고 일반고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면, 결정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즉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결정이 번복되는 사유와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8명의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의 협의 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재학생과 16명의 졸업생을 선정하였다. 졸업생 중 12명은 졸업 후 1~2년 이내인 청소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졸업 4~5년 이내의 청소년들이었다. 면담대상자들은 성비와 서울·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비율을 고려하면서 선정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 실태, 진로계획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낮은 학교성적이었다. 더불어 면담대상자들을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함께 느끼면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형편은 개인차를 고려하고도, 대체로 여유롭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면담대상자들은 시의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바로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졌다. 성적은 이들이 원하는 상귀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었으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진학을 포기 혹은 유예하고 있었다. 동시에 대학보다는 취업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 비진학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들 중 늦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더 늦게는 수능 성적을 받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다. 결국 일반고 내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결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와 좌절의 반복된 경험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의 경우, 취학 전부터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정이 가진 자원 내에서 가능한 교육적 지원들을 받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받는 교육적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얻는 어중간한 성적은 학교 내 관심과 지원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행이 아니고는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고 지내던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세간의 인식을 이기지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한다. 이후는 그 이전보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인지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이들은 소위 '인서울'대학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하는 자책만 깊어졌다. 이 같이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도와 좌절의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면담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절대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면담대상자들에게 성공은 대학졸업장이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면담대상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비진학을 결정 한 이후,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로 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기로 했으니, 돈이라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면담대상자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서비스업과 노동직, 단순 제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낮은 임금과 힘든 육체노동의 특징을 가진다. 대신 이 아르바이트들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면담대상자들 중 아르바이트를 진로계획과 연결하여 하는 이들은 없었고, 대부분 용돈벌이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준에서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이외의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내고 있었다. TV시청, 게임 혹은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불규칙적인 생활로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다.

명확하게 방향을 결정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면담대상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수강을 원하는 이들도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말끔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반이나 직업위탁교육으로 진로를 선회한 이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편에 속했다.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의 청소년들과 비진학의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대학이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학과 노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비진학의 결정과 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졸업장을 '비싼 자격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을 학문탐구나 지적활동을 하는 곳으로 떠올리는 이는 없었다. 이들에게 대학은 그 졸업장의 가치와 내가 투자해야 할 비용을 따져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판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불안이 졸업 이후까지 지속된다. 다음으로 면담대상자들은 일이나 노동을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했다. 일의 내용보다는 일자리의 급여와 노동강도를 우선 순위로 따졌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은 종국에는 자영업을 꿈꾸고 있었다. 진로계획이나 준비가 구체화되지 않을수록 사업체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외의 면담대상자들도 40대 이후에는 가게를 차려서 사람을 두고 '놀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노동은 결국 어떤 일도 하지 않기 위한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노동에 대한 이런 인식은 대학 비진학의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이 꿈꾸는 삶이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대가가 불확실한 대학에 투자할 필요는 사라진다.

4. 논의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 본 후 2차 자료 분석과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능성적은 일반고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확인된 반면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3 시절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고 재학 중 어떠한 진로 계획을 구축하는 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소통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가에 따라 일반고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의 작용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비진학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면담대상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비진학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불안은 고3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들은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근로와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단순 제조업 또는 서비스직에 근무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및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을 기반으로 장기 진로계획과 연결하는 이들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졸 비진학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직업교육을 받아 본 청소년은 10명 중 1.6명으로 다수의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현재 대학 비진학,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은 거의 없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전반적으로 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실제로 일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고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접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등과 같은 '맛보기' 형태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업위탁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참여 형식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 후 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이 연구는 방과 후 서비스 사업에 주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에 기초한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학업부진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서비스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현재 중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고등학생 방과후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 운영이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행령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도 담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진로 ·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고와 직업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종 직업들을 발굴하여 인턴쉽, 도제교육, 산학협동교육 등을 강화해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실무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를 구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축소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 열약한 근무조건, 학력에 따른 내부 노동시장 불평등과 같은 노동시장 불안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강영배, 김기헌 (2004). 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고등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49**, 21-39.

관계부처합동 (2010a).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관계부처합동 (2010b). **진로교육종합계획**.

교육부 (2015b). **고졸취업자에 대학교육 기회 활짝 연다**. 보도자료.

김양분 (2013).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청 (2013.4.24).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보도자료.

이상준, 이수경 (2013). **2013 비진학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필남 (2014). 고졸취업 확대 정책이 고졸취업자 일자리의 질에 미친 영향과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 분석. **고용패널학술대회, 고졸노동시장I**, 129-148.

조한혜정 (2014).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최동선, 박동열 (2013). **일반고생의 직업교육 수요 충족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5).**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publ/list?itemCode=02&survSeq=&menuSeq=0&division=&word=에서 2015년 10월 29일 인출.

부 록

[부록 표-1]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 및 기초통계

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 (SD)
성별(남성)	남성=1, 여성=0	.56 (.50)
자산 규모	부동산과 금융자산 총액 5천만원 미만=1, 5천만원 이상~4억원 미만=2 4억원 이상=3	1.95 (.55)
부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5.46 (1.29)
모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4.94 (1.04)
양부모 가정(친부모)	양부모 가정=1,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유형의 보호자=0	.9 (0.30)
형제자매 수	형제 · 자매 수	2.19 (0.67)
학급 석차	학급 석차 단위(%)	48.05 (27.01)
수능 성적(백분위)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언어(0.87), 수리(0.78), 외국어(0.91)	0.01 (1)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보호자 (아무도 없음)	없음=1, 있음=0	.16 (.37)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고등학교 이하=1, 2~3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대학원(석사)=4, 대학원(박사)=5	3.45 (0.92)
미래진로대화	부모와 대화 여부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어떻게 살지 대화(0.64),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0.76),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0.73),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문항에 대한(0.60)	-0.01 (1)
사회적자본	부모의 관심정도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0.01 (1)

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 (SD)
	요인부하값= 대화시간(0.50), 학업 및 성적(0.64), 친구(0.74), 친한 친구의 부모(0.60), 학교생활 (0.73),생활습관(0.67), 개인적 고민(0.67)	
미래직업계획 (있음)	있음=1, 없음=0	.72 (.45)
자아성숙도	자아인지 능력 세부 항목(1~5점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0.75),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지(0.70),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0.67), 결단력(0.65), 계획실천능력(0.63),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0.54)	0.01 (1)
고교유형 (공립)	공립=1, 사립=0	0.45 (0.50)
고교계열 (문과)	문과=1, 기타=0	0.55 (0.50)
지역 (특별시/광역시)	특별시 · 광역시=1, 읍 · 면지역=0	.48 (0.50)
지역 (시군구(동))	시군구(동)=1, 읍 · 면지역=0	0.33 (0.47)
일반고 진학이유 (대학진학)	대학 진학 목적=1, 구체적인 계획 없었음 및 기타=0	.73 (0.44)
학교만족도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0 (0.80)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	있음=1, 없음=0	0.59 (0.50)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공부 및 향후 진로=1, 기타=0	0.63 (0.48)
잠재적 비진학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 계획=1, 진학계획=0	0.04 (0.19)
고졸 비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1, 대학 진학=0	0.03 (0.18)

발표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정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개년 연속과제로 설계되어 수행되고 있는「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이다.「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2014:5).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은 15세이며, 동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는 성인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현실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여타 과업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배태되고 있다(안선영 외, 2014:5). 이에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질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1차년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확인 · 발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실 한국사회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취약하다. 2014년 5월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과 함께 최하위등급(no guarantee for rights)으로 분류되었다(연합뉴스,

12)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2014.5.22; 안선영 외, 2014:4에서 재인용).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들은 높은 청 · 장년의 실업률 등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더불어 하향평준화 된 임금,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소위 '밑바닥 노동'으로 불리우는 노동시장 최하층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김지경 · 박창남 · 정윤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근로자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위치하고, 청소년의 노동을 잔여적(residual)인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근로경험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김지경 · 박창남 · 정윤미, 2014).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10대에는 학업에 전념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 노출되고, 20대에는 '경험'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부당근로 요구를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근로관계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는 달리,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기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다른 어떤 집단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이들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수행한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Ⅰ'(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의 약 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85.7%가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66.3%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비 마련'(50.4%)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송혜윤·이정민, 2015).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광범하게 관찰된다. 예컨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지경·이광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1%가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은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후기 청소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정책적 · 학문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이슈에서 보았을 때, 근로보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소근로자가 주된 정책대상으로 상정되었고, 성인과 다름없는 후기 청소년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치와 연령주의가 맞물려 노동시장의 최하위층을 구성함에 따라, 이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분히 보호적 관점을 취한다. 그에 비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성인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후기 청소년', '청년'이라는 이슈에서는 취업과 실업이라는 거대 담론에 가로막혀,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성인의 근로와는 제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지속적인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일반 근로와는 달리,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경험하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로 인해 경력이 쌓이고 숙련도가 높아져도 '아르바이트'라는 틀에 갇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형 노동'을 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임시적이지 않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회구조적 이유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성격을 갖는다. 즉 아르바이트가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생계수단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펙' 관리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처럼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반 성인 근로자의 근로와는 차별화되는 지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과제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조망하기 위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인턴, 현장실습 등 후기 청소년 근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후기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2015년 기준 전국의 1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24세 청소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히 19~24세 청소년이 아닌, 19~24세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모집단 규모를 특정하기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에 의한 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 아닌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을 적용하여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실시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과 예산, 그리고 주요 배경변인 및 업종별 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목표 표본수를 3,000명으로 설정하고,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웹서베이 방식을 적용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24세 후기 청소년
표집틀	• 비확률표집(2014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만 19세~24세 인구분포비율에 의한 할당 표집)
표본수	• 3,000명 (최종응답자 3,003명)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웹서베이(web-survey)
조사시기	• 2015년 7월 말-8월 말

13) 표본할당은 2014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별 만 19~24세 인구분포를 확인한 후, 전국 17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할당의 틀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①수도권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②충청·강원권역으로,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③호남·제주권역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④영남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내용	•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규정 인지수준 •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실태(참여 목적, 경로, 업종, 근로조건, 임금수준, 부당처우 경험, 근로 강도 등) • 업종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매장관리판매, 서빙·주방, 사무보조, 물류운송·건설, 임상시험) • 노동인권경험, 인턴 경험 •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효과, 만족도 • 인구학적 배경변인

2)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참여 동기와 방법,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아르바이트의 의미,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욕구에 대한 후기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전문가 자문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청소년 근로 관련 현장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 노동인권교육 분야 전문가, 청년 당사자 조직의 실무자 등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연구 진행 방향 설정, 후기 청소년 근로 관련 현안 파악, 정책 동향 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에 활용되었다.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1) 아르바이트 목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1순위 목적)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0.9%, '등록금을 벌기 위해' 8.4%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용돈)를 충당하기 어려운 후기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비나 부채, 또는 나의 부채 상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과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술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주된 이유가 직업체험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활비(용돈) 충당 등 생계유지 목적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표 2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1순위)** 단위: 명(%)

내용/구분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가족의 생활비,부채 및 나의 부채 때문에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연수/여행 비용 마련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기타	X^2
전체		253(8.4)	2,058(68.5)	136(4.5)	327(10.9)	58(1.9)	121(4.0)	45(1.5)	5(0.2)	–
성별	남성	126(12.2)	666(64.2)	55(5.3)	135(13.0)	15(1.4)	23(2.2)	15(1.4)	2(0.2)	54.001*** (d.f=7)
	여성	127(6.5)	1,392(70.8)	81(4.1)	192(9.8)	43(2.2)	98(5.0)	30(1.5)	3(0.2)	
대학 진학	비진학	6(4.5)	78(59.1)	15(11.4)	14(10.6)	2(1.5)	5(3.8)	11(8.3)	1(0.8)	64.597*** (d.f=7)
	진학	247(8.6)	1,980(69.0)	121(4.2)	313(10.9)	56(2.0)	116(4.0)	34(1.2)	4(0.1)	

*p<.05, **p<.01, ***p<.001

(2) 주당 평균 근무일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를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 아르바이트 참여 일수는 일주일에 평균 3.96일로 파악된 가운데, 성별, 대학 진학 여부 및 채무 보유 수준에 따라 차이가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에 비해 비진학 후기 청소년이, 그리고 본인 명의의 채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채무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 단위: 일

내용/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1,037	3.96	1.64	3.221** (d.f=3,001)
	여성	1,966	3.76	1.61	
대학 진학	비진학	132	4.58	1.42	6.230*** (d.f=147.183)
	진학	2,871	3.79	1.62	
채무 보유	없다	1,955	3.77	1.62	3.629* (d.f=3) ①–③**
	500만원 미만	390	3.84	1.56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85	4.05	1.68	
	2,000만원 이상	273	3.91	1.61	

*p<.05, **p<.01, ***p<.001

(3) 하루 평균 근무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조사 결과, 4시간 이상~8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18.7%로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에 소요하는 시간이 3시간 이하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하였다. 이를 채무 보유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7.4%로 파악된 반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채무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소요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 등 생활의 문제를 감당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표 4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단위: 명(%)

내용/구분		3시간 이하	4시간~8시간 이하	8시간 이상	X^2
전체		277(9.2)	2,165(72.1)	561(18.7)	–
성별	남성	100(9.6)	684(66.0)	253(24.4)	36.274*** (d.f=2)
	여성	177(9.0)	1,481(75.3)	308(15.7)	
대학 진학	비진학	5(3.8)	93(70.5)	34(25.8)	8.176* (d.f=2)
	진학	272(9.5)	2,072(72.2)	527(18.4)	
채무 보유	없다	206(10.5)	1,409(72.1)	340(17.4)	16.133* (d.f=6)
	500만원 미만	28(7.2)	278(71.3)	84(21.5)	
	500만원–2000만원 미만	25(6.5)	283(73.5)	77(20.0)	
	2,000만원 이상	18(6.6)	195(71.4)	60(22.0)	

*p<.05, **p<.01, ***p<.001

(4)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후기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업종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모두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서빙·주방이 38.1%로 가장 높았고, 매장관리·판매 32.3%, 서비스 19.3%, 강사·교육·개인지도·과외 18.2%, 사무·회계 16.3%, 생산·기능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나 매장관리·판매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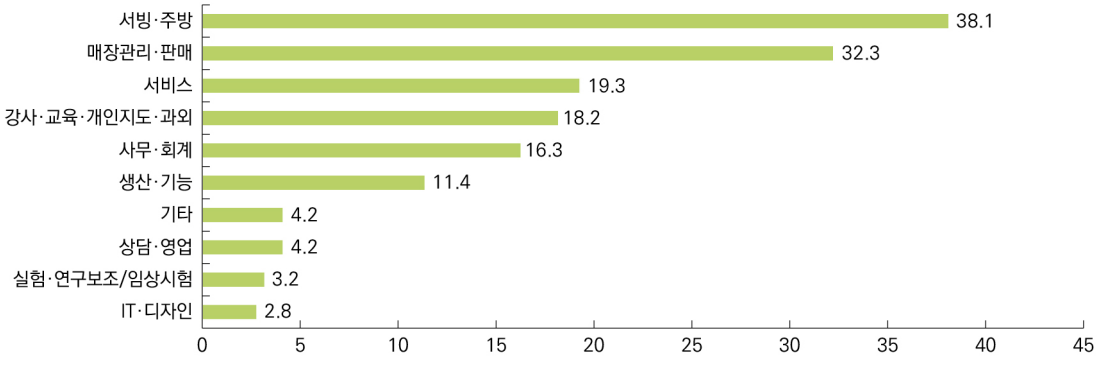

【그림 1】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대분류)

[그림 2]는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을 6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눈 다음, 이를 토대로 상위 10개 업종을 선별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후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편의점'으로 14.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음식점·레스토랑'이 13.8%, '커피전문점·카페' 10.2%,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면세점' 9.9%, '개인지도·과외' 9.6% 등이 비교적 많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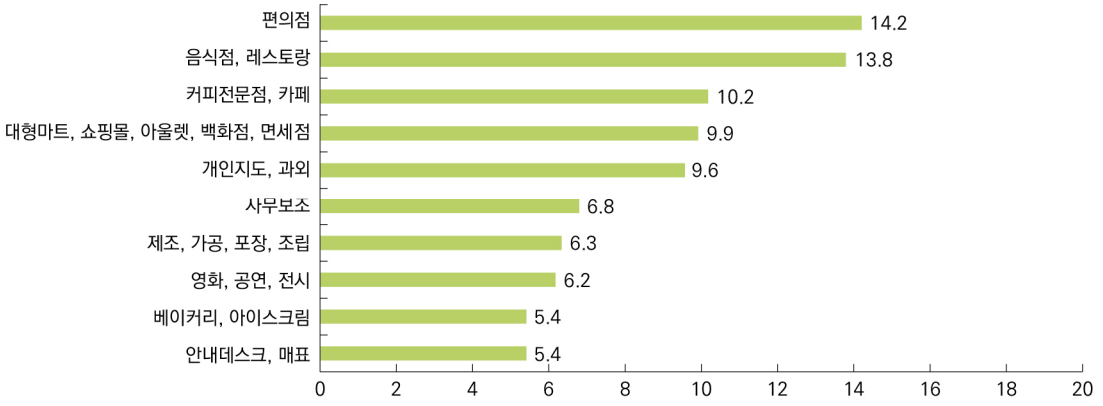

【그림 2】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상위 10개 업종(세분류)

(5) 구직 경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응답이 22.7%, 가족 또는 친척 소개 7.5%, 학교 또는 교수님 소개 6.7%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은 대부분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만큼 이들 사이트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를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연소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대 연소근로자와 20대 후기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차이가 존재한다.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친구나 지인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 된 구직경로였으나 후기 청소년들은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보편화 된 구직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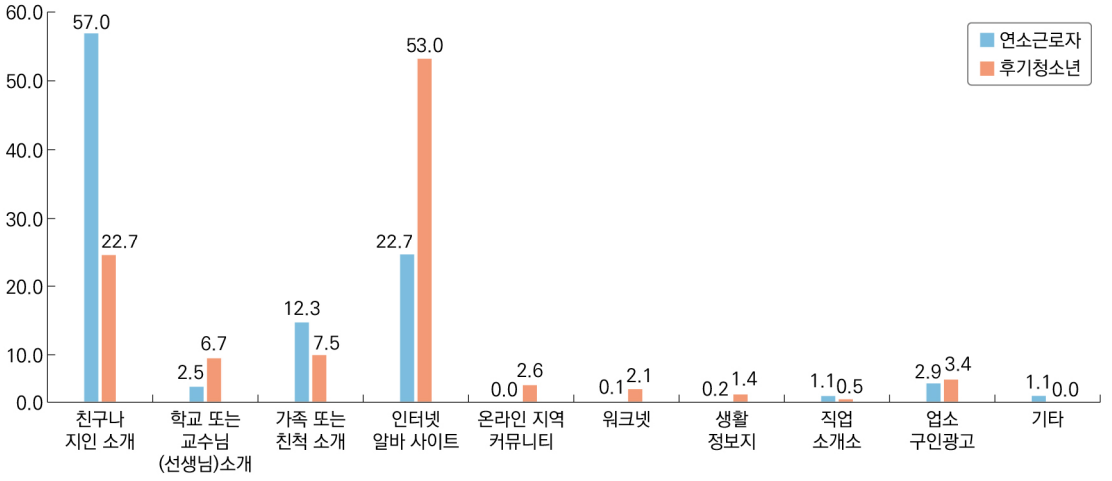

* 주: 연소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안선영 외(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p.117에서 발췌

【그림 3】 연소근로자 및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비교

(6) 구직 조건

[그림 4]에는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로 고려하는 구직조건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순위 및 2순위 중복응답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급여 수준'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근무일 및 근무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8.1%, '집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4%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23.3%, '나의 관심·적성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3.1%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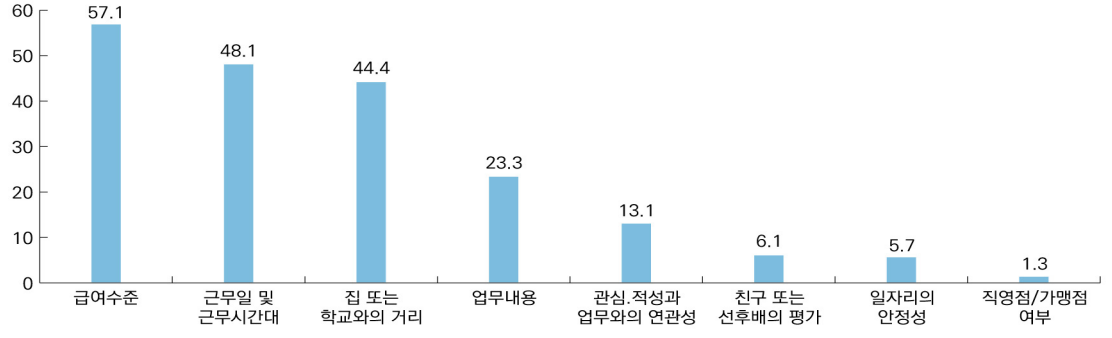

【그림 4】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 조건(중복응답)

(7) 근무 환경

① 사업장 규모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적용이 배제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의 수가 총 5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5-9인 25.9%, 10-29인 14.1%, 30-99인 7.4% 등으로 파악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사업장 규모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상 일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보호에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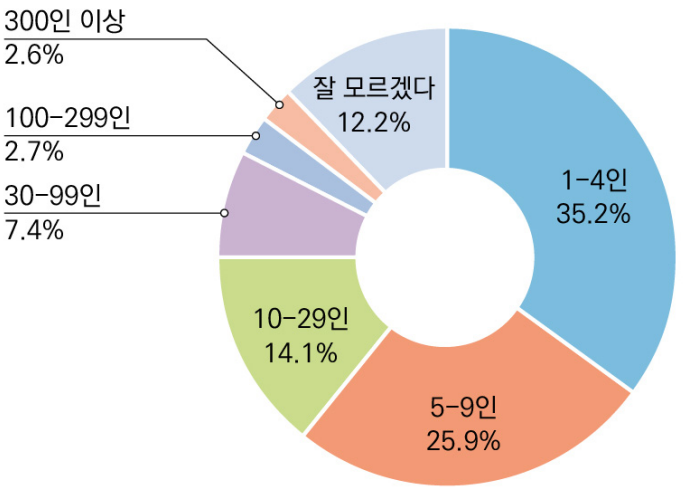

【그림 5】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②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14년 6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7.14.참조).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근로자가 불리한 지위에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 받았다는 응답 비율을 산출한 결과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사례는 전체의 21.8%에 불과했고, 15.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인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여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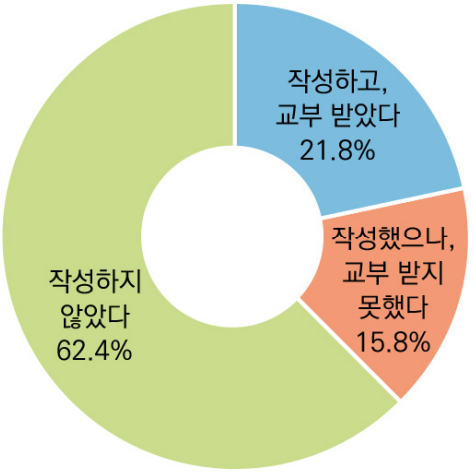

【그림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비율

(8) 임금 수준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실태를 다각도로 확인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버는 평균 수입, 시간 당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임금체불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한 달 평균 수입과 시간 당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월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월평균 수입이 31-50만원이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고, 21-30만원 18.6%, 20만원 이하 12.9%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7.5%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 월평균 51만원 이상 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5%로 파악되었고, 한 달에 101만원 이상 버는 응답자는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월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단위: 명(%)

내용/구분		20만원 이하	2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만원 이상	X^2
전체		387(12.9)	558(18.6)	781(26.0)	401(13.4)	512(17.0)	364(12.1)	-
성별	남성	109(10.5)	136(13.1)	251(24.2)	138(13.3)	203(19.6)	200(19.3)	107.415*** (d.f=5)
	여성	278(14.1)	422(21.5)	530(27.0)	263(13.4)	309(15.7)	164(8.3)	
대학 진학	비진학	13(9.8)	12(9.1)	28(21.2)	18(13.6)	34(25.8)	27(20.5)	22.962*** (d.f=5)
	진학	374(13.0)	546(19.0)	753(26.2)	383(13.3)	478(16.6)	337(11.7)	

*p<.05, **p<.01, ***p<.001

〈표 6〉은 시간 당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서는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6.2%를 차지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급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시급이 5,580원이라는 응답은 21.9%를 차지하였고, 5,580원 초과~6,000원 이하라는 응답이 31.8%, 6000원 초과~10,000원 이하 23.3%, 10,000원 초과 6.8%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응답자의 70%가 시급 6,000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시간 당 임금 수준** 단위: 명(%)

내용/구분		최저임금 미만 (5,580원 미만)	최저임금 (5,580원)	5,580원 초과 6,000원 이하	6,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10,000원 초과	X^2
전체		485(16.2)	658(21.9)	956(31.8)	701(23.3)	203(6.8)	–
성별	남성	155(14.9)	202(19.5)	350(33.8)	259(25.0)	71(6.8)	9.350 (d.f=4)
	여성	330(16.8)	456(23.2)	606(30.8)	442(22.5)	132(6.7)	
대학진학	비진학	27(20.5)	36(27.3)	47(35.6)	21(15.9)	1(0.8)	14.639** (d.f=4)
	진학	458(16.0)	622(21.7)	909(31.7)	680(23.7)	202(7.0)	
업 종	매장관리 · 판매	208(30.2)	198(28.8)	202(29.4)	77(11.2)	3(0.4)	1313.403*** (d.f=24)
	서빙 · 주방	126(14.7)	224(26.2)	365(42.7)	136(15.9)	4(0.5)	
	서비스	46(13.1)	76(21.7)	128(36.5)	94(26.8)	7(2.0)	
	생산 · 기능	22(10.8)	52(25.5)	64(31.4)	64(31.4)	2(1.0)	
	사무 · 회계	29(9.9)	58(19.9)	86(29.5)	111(38.0)	8(2.7)	
	교육 · 과외	16(4.0)	14(3.5)	55(13.9)	143(36.0)	169(42.6)	
	기타	38(17.6)	36(16.7)	56(25.9)	76(35.2)	10(4.6)	
사업장규모	5인 미만	230(21.8)	227(21.5)	326(30.9)	162(15.3)	111(10.5)	139.949*** (d.f=4)
	5인 이상	215(13.6)	365(23.1)	543(34.3)	421(26.6)	37(2.3)	
근로계약서	작성함	108(9.6)	335(29.7)	358(31.7)	304(27.0)	23(2.0)	168.008*** (d.f=4)
	작성하지 않음	377(20.1)	323(17.2)	598(31.9)	397(21.2)	180(9.6)	

*p<.05, **p<.01, ***p<.001

2) 근로보호 실태

(1) 권리침해 실태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대우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7]에는 다양한 부당 대우 유형 가운데, 임금과 관련한 부당 대우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임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는 임금 체불 경험이 26.5%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2015년 법정 최저임금(5,58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도 23.3%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13.7%,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2.4%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6.8%,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4.6%,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 4.0% 등으로 파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린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보상을 예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근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을 했지만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4.0%, 근무 중 손님이 없거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속칭 '꺾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4%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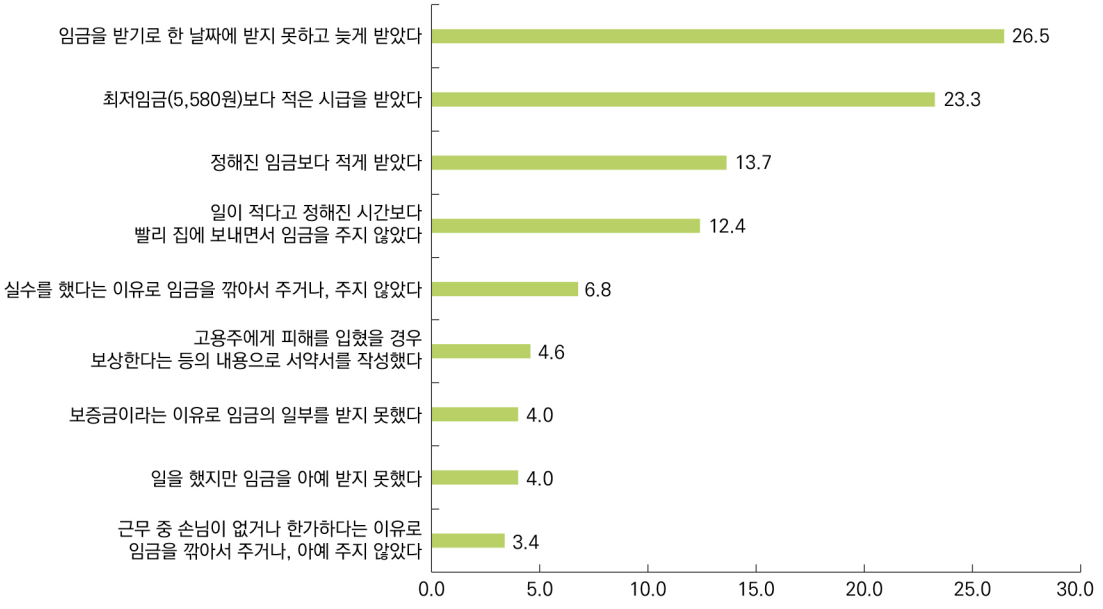

【그림 7】 부당 대우 경험 (1): 임금 관련 부당 대우 (단위: %)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서약서 작성 및 속칭 '꺾기'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2015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후기 청소년 가운데 45.3%가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관련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당 처우가 대단히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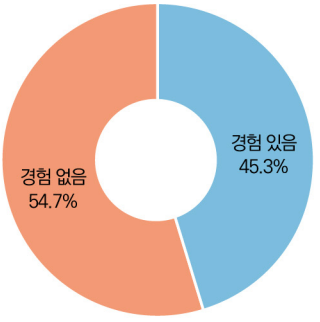

【그림 8】 임금 관련 부당 대우 경험 (단위: %)

다음으로, [그림 9]에는 휴게시간 보장,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요구, 업무 상 재해에 대한 대응 등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 대우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3%에 달해, 3명 중 1명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본래 맡은 일 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4%로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1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8.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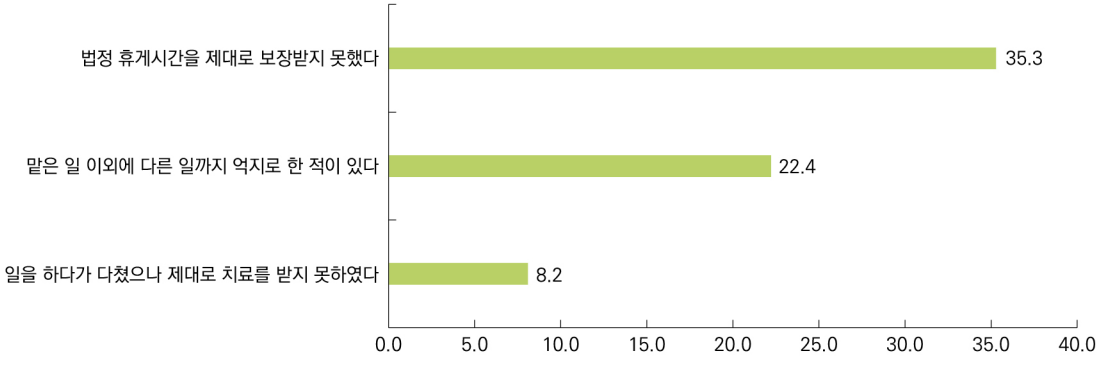

【그림 9】 부당 대우 경험 (2): 업무 관련 부당 대우 (단위: %)

[그림 10]에는 해고 또는 퇴직 단계에서 경험한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해야 유효하며, 문자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구두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부적절한 해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지 않으면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은 8.0%,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응답은 2.2% 등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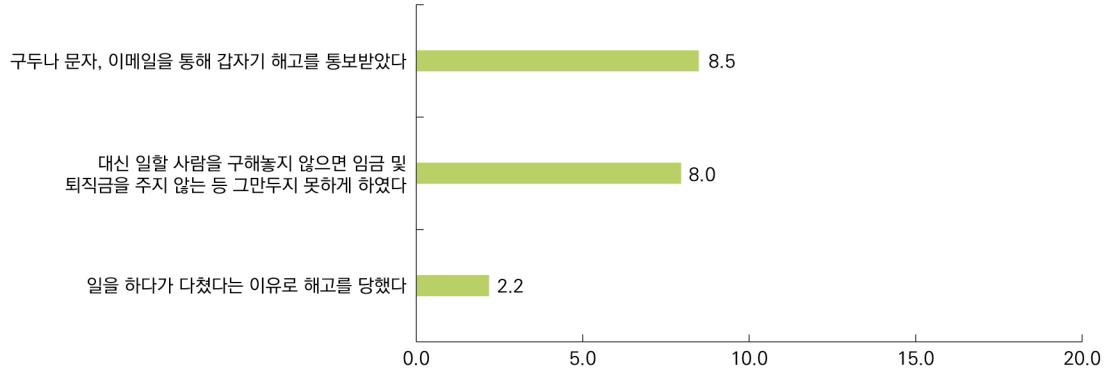

【그림 10】 부당 대우 경험 (3): 해고 관련 부당 대우

(2) 대처 방법

앞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36.7%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년들은 부당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 참고 일을 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는 응답은 19.8%로 파악되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나, 대응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4%,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표 7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내용/구분		참고 계속 일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개인적으로 항의 하였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하였다	부당한 일인지 몰라서 계속 일했다
전체		812(40.9)	252(12.7)	729(36.7)	394(19.8)	226(11.4)	30(1.5)	124(6.2)	114(5.7)
성별	남성	267(42.7)	71(11.3)	229(36.6)	139(22.2)	74(11.8)	17(2.7)	62(9.9)	19(3.0)
	여성	545(40.0)	181(13.3)	500(36.7)	255(18.7)	152(11.2)	13(1.0)	62(4.6)	95(7.0)
노동인권 교육경험	없음	683(41.1)	224(13.5)	619(37.3)	319(19.2)	174(10.5)	23(1.4)	91(5.5)	103(6.2)
	있음	129(39.6)	28(8.6)	110(33.7)	75(23.0)	52(16.0)	7(2.1)	33(10.1)	11(3.4)

(3) 노동인권교육 경험

노동인권교육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에 노동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5%에 불과하였고, 82.5%는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상술한 결과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내용/구분		없음	있음	X^2
전체		2,477(82.5)	526(17.5)	–
성별	남성	831(80.1)	206(19.9)	6.050* (d.f=1)
	여성	1,646(83.7)	320(16.3)	
대학진학	비진학	102(77.3)	30(22.7)	2.595 (d.f=1)
	진학	2,375(82.7)	496(17.3)	

*p<.05, **p<.01, ***p<.001

노동인권교육의 전달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가 22.6%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과 '지역사회 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21.3%로 파악되었다.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이나 본사에서 받았다고 답한 것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기본적인 근로관계 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을 응답자들이 노동인권교육으로 간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모두 포함하고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로 적절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사례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재 노동인권교육 전달 체계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로에 차이가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진학 후기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시설 및 기타 시설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진학 후기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높게 파악되었다.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학교를 통한 확산 외에 비진학 청소년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9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내용/구분		중·고등학교	대학	아르바이트 업체[1]	지역사회시설[2] 및 기타
전체		119(22.6)	112(21.3)	323(61.4)	112(21.3)
대학진학	비진학	13(43.3)	1(3.3)	16(53.3)	12(40.0)
	진학	106(21.4)	111(22.4)	307(61.9)	100(20.2)

* 주: 1) 아르바이트 업체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 또는 본사에서 교육받은 경우를 포함함.
2) 지역사회시설에는 ①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②고용지청 또는 근로자복지센터, ③동네 도서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 등이 포함됨.

(4) 노동권익 인지 수준

[그림 11]에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 관련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각 문항별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11개 문항 가운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문항과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후기 청소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고용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도 요양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29.9%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나타냈으며,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38.7%만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하다가 실수를 해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인지율도 각각 50% 수준에 머물렀다. 상술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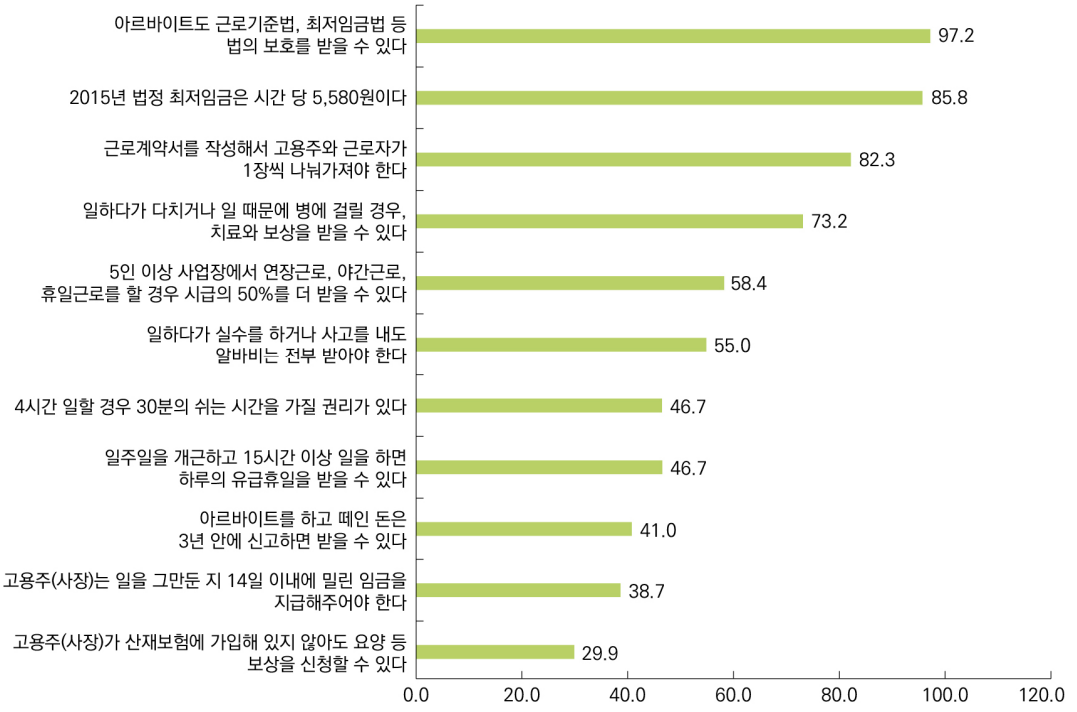

【그림 11】 노동관계 법령 인지율 (단위: %)

앞서 살펴본 11개 문항에 대한 인지 여부를 합산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평균은 6.64개로 나타나, 후기 청소년들은 제시된 11개 문항 중에서 평균 6~7개 가량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인지 수준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평균 6.33점을 나타낸 반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8.14점을 나타내 두 집단 간에 약 2점 가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더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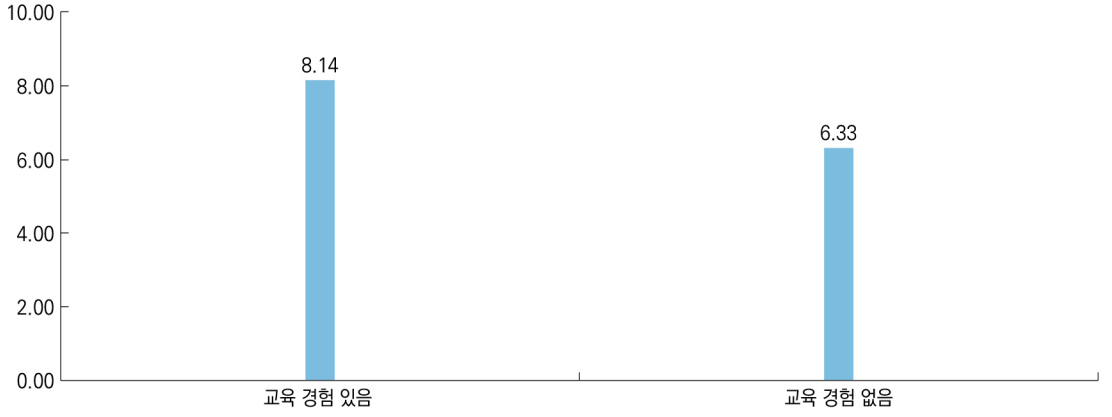

* 주: t=-15.092**, p<.001

【그림 12】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인지 수준 비교 (단위: 개)

(5)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그림 13]은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율을 비교하였다.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전일제 근로자처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70%(67.9%)에 달하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지내게 될까 두려워하는 비율도 약 60%(58.7%)에 이른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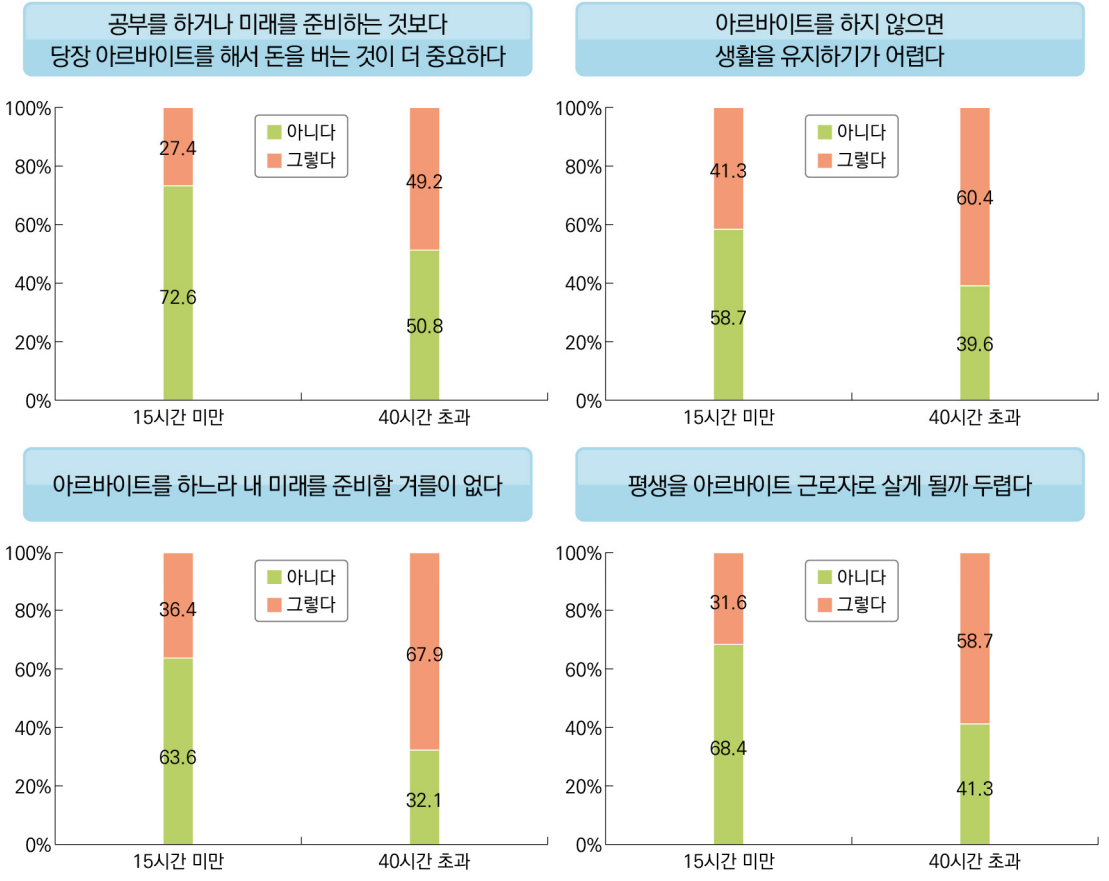

【그림 11】 주당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별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비교

3) 정책 욕구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본 설문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이 모든 문항에 걸쳐 89~98%로 나타나, 여기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가운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당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3점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는 응답이 3.6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3.58점으로 3위에 올랐고, '착한 알바와 나쁜 알바 기업에 대한 실명 공개' 3.56점, '고용주 대상으로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교육 의무화' 3.51점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1위, 2위 방안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와 관련이 깊고, 3위, 4위에 거론된 대안들도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대안도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 착한 알바와 나쁜 알바 기업 공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교육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 및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는 등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95.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48.2%+필요하다 47.4%)는 의견을 보내, 그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구비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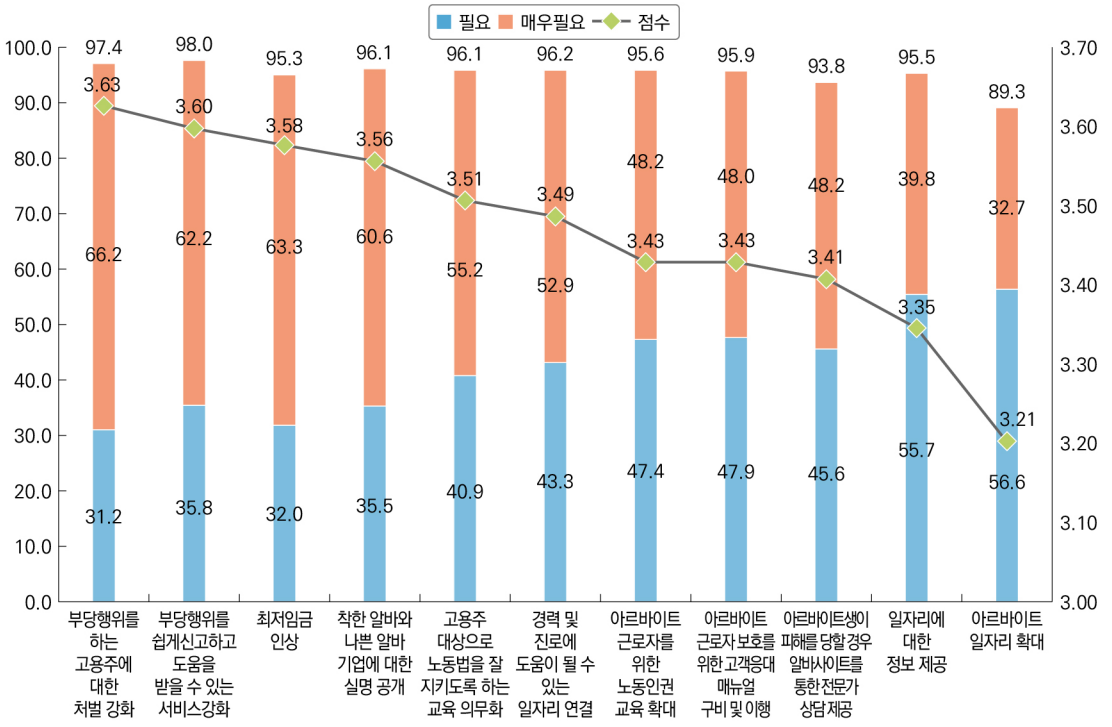

【그림 12】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입직-근로 과정-문제 발생 시 권리 보호-문제 예방 등 일련의 흐름에 따라 매 단계마다 적합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직환경 개선-근로환경 개선-근로권익 보호-노동인권 교육강화로 이어지는 정책대안 제시의 틀(frame)을 적용해, 4개 영역에서 15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15개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구직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신뢰할만한 사업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통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①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②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를 정책확산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③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등을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①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소규모·업종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②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를 정책확산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습적인 소액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배너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③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가칭) 「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②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③휴게권 보장 방안, ④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⑤근로감독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간소화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②급여명세서 작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세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급여명세서 작성 위반 시 즉시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표준급여명세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③휴게권 보장 방안과 관련하여 '꺾기'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휴게권 보장 및 휴게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④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방식을 불시점검 및 반복점검방식으로 개선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⑤근로감독 확대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인력풀을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는 ①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 ②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 ③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 ④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1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소액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소화된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를 위해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하고, 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3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허용 방안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4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작업중지권'과 '불이익 처분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여타 법률안 개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크게 1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2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등 투트랙(two-track)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1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비교과과정 및 교양강의 개설을 통해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고용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응대업종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림 13]에는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영역별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구직환경 개선 | 근로환경 개선 | 근로권익 보호 | 노동인권교육 강화

1. 구직환경 개선

1-1.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1-1. 소규모 · 업종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정책 전달 통로확대
- 1-1-2.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 운영

1-2. 근로보호 정책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 활용도 제고
- 1-2-1. 상습적인 소액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 1-2-2. 인터넷 구인 · 구직 사이트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규정 준수 및 게시 방법 개선

1-3.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 1-3-1. 청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가이드라인 마련
- 1-3-2. (가칭)「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선정 및 지원

2. 근로환경 개선

2-1.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 2-1-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 2-1-2. 인터넷 구인 · 구직 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 명단 게재
- 2-1-3. 업종별 간소화 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및 보급

2-2. 급여명세서 교부 풍토 조성
- 2-2-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예외 규정 최소화
- 2-2-2. 급여명세서 작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2-3. 표준급여명세서 제작 및 보급

2-3. 휴게권 보장
- 2-3-1. 꺾기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보완
- 2-3-2.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확보 의무화
- 2-3-3. 휴게권 보장 및 휴게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2-4.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 2-4-1.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 및 반복점검 실시
- 2-4-2.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체에 대한 엄격한 사후조치 집행

2-5. 근로감독 확대 및 인력풀 확충
- 2-5-1. 민간 자원을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 2-5-2.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3. 근로권익 보호

3-1.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
- 3-1-1. 아르바이트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간소화 된 구상권 제도 도입

3-2. 부당대우에 대한 후기 청소년 대상 신고 · 상담 제도 내실화
- 3-2-1.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신고 · 상담 활성화
- 3-2-2. 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상담센터' 운영

3-3.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 폐지
- 3-3-1.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폐지

3-4.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3-4-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 작업중지권 및 불이익 처분금지
- 3-4-2.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여타 법률안 개정 노력

3-5. 인턴제도 정비
- 3-5-1. 인턴제도 악용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3-5-2. 인턴제도 악용 사례 근절을 위한 수시감독 강화

4. 노동인권교육 강화

4-1.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4-1-1. 대학 진학 청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기
- 4-1-2.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청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 4-1-3. 초중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강화

4-2.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 4-2-1.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
- 4-2-2. 청소년 고용 고용주의 의무사항 마련 및 교육
- 4-2-3. 고객응대 업종 고용주 대상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 방안 안내

【그림 13】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7. 14.)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14일(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1&stext=%BC%F6%BD%C0%20%B0%A8%BE%D7&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25&aid=4760&bpage=1에서 2015년 12월 1일 인출.

김지경, 박창남, 정윤미(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경, 이광호(2013).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Ⅱ: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혜윤, 이정민 (2015). **위험한 아르바이트 권하는 사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및 고위험 아르바이트 인식조사.** 이슈페이퍼 2015-02. 서울: 대학내일20대연구소.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합뉴스 (2014. 5. 22.).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2/0601200100AKR20140522001000098.HTML에서 2015년 2월 24일 인출.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령 참고자료]

근로기준법(2014. 1. 21. 개정, 법률 제123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12325,20140121)에서 2015년 5월 31일 인출.

세미나자료집 16-S10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

인 쇄 2016년 3월 22일
발 행 2016년 3월 2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에 무단 전제·복제를 금함